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려시대 기인제의 운영과 변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許 在 亨

2014년 2월

고려시대 기인제의 운영과 변천

지도교수 全 暎 俊

허 재 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허재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위 원_____인

위 원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The Operation and Change of Gi-In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HEO JAE-HYUNG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peration and Change of Gi-In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King Taejo(太祖) of Goryeo initiated the Gi-In system(其人制, bring the sons of Hojok, the powerful local gentry, as a hostage and had them escort the King) to win over Hojok through the policy to embrace and conciliate Hojok and strengthen the control over the local power. While Gi-Ins had served as advisors on local communities in the early Goryeo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on Gi-Ins brought a change in the period when the royal authority and policy systems were stabiliz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Gi-Ins mainly analyzed the origin and operation system of the Gi-In system in the early Goryeo Dynasty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They only mentioned the roles of Gi-Ins in a changed position in the late Goryeo Dynasty to be turned into toil or menial works, rather than researching the roles in detail and their influence on the Goryeo society. In this regard, it was necessary to identify the change and use of the functions of the Gi-In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that have not been discovered in detail. To that end, this paper analyzed the articles on Gi-Ins in 『Goryeosa(高麗史, history book of the Goryeo Dynasty)』 and 『Goryeosageolyo(高麗史節要, compilation of Goryeo history)』 to explore the origin of the Gi-In system, the functions of the system in the early Goryeo Dynasty and how the Goryeo Dynasty used the system. Moreover, this paper reviewed the functions of the

Gi-In system and the change of the roles of Gi-Ins in the late Goryeo Dynasty,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status and roles of Hyangris(local officials) who were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Gi-Ins.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roles of Gi-Ins in the early Goryeo Dynasty were not hard works after identifying that the government treated Gi-Ins well by giving Dongjeongjik(同正職) or lands as a reward for their roles along with the social status as the sons of Hyangris in the early Goryeo Dynasty. However, with the unstable caste system in the late Goryeo Dynasty, it was discovered that Gi-Ins fell into the class who were engaged in menial works as the commoner(身良役賤) and their roles changed a lot from the early Goryeo Dynasty.

In the early Goryeo Dynasty, Gi-Ins were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administration of local affairs as an advisor on their hometown or by recommending the candidates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However,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and Mongolian invasion, Gi-Ins were mobilized to serve hard works for the nation such as farming the fallow lands and constructing the palace buildings. Unlike the first purpose of the system in the early Goryeo Dynasty, Gi-Ins were reused in many socio-economic areas. Although the abolishment of the Gi-In System was discussed because of the negative impact of the roles of Gi-Ins focused on hard works, the system kept remained as Goryeo desperately needed to secure labor force.

- 目 次 -

Abstract

I. 序論	1
1. 연구목적 및 배경	1
2. 연구 성과 검토 및 연구방법	2
II. 고려 전기 其人制의 시행과 운영	5
1. 기인제의 시행 목적	5
2. 기인제의 운영 양상	10
III. 고려 후기 其人制의 변질과 운영	19
1. 기인제의 변질과 파탄 원인	19
2. 기인역의 운영과 변화	26
IV. 結論	39
參考文獻	42

<표 목차>

<표 1> 太祖 元年의 謀反事件	6
<표 2> 太祖代 歸附 豪族의 優待策	8
<표 3> 成宗 2년 官職체계의 정비	13
<표 4> 고려 후기에 시행된 주요 토목공사	32

I.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高麗 太祖 王建은 後三國時代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통일왕조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에는 강력한 호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방의 호족들을 懷柔·包攝하여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에 태조는 重幣卑辭策·婚姻政策·事審官制度·其人制度 등을 실시하였다.¹⁾

其人은 고려 초 지방에 대한 顧問 역할 및 事審官의 舉望權을 갖고 있었으며 일정한 入役期間이 지나면 同正職을 제수받았다. 점차 왕권과 정치제도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르면서 기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成宗대부터 顯宗대까지 중앙 및 지방제도의 정비와 1077년(文宗 31)의 其人選上規制는 기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향리세력의 약화와 함께 그 지위가 격하되어 갔다. 더구나 武臣政權과 몽골침입기를 거치면서 이전의 지위를 상실하고 국가 요역에 동원되는 등 점차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기인의 신분변화는 고려 초기의 설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었고, 왕권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부터 기인제는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 재 활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고려의 사회경제 체제에서 其人役은 제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향리의 신분 변화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중앙정부의 기인제 운영 방식에 대한 분석은, 고려의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회유와 견제를 목적으로 하였던 정책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역사적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다.

1) 高麗 太祖代의 豪族政策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權眞澈, 「高麗太祖의 民族統合政策研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1997; 金東業, 「高麗 太祖의 對豪族政策」,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嚴成鎔, 「高麗初期 王權과 地方豪族의 趣移 : 王權과 관련한 地方豪族의 身分變化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5; 兪炳基, 「高麗初 豪族의 動向과 王權強化策 - 光宗의 王權強化策을 中心으로」, 『전주사학』 1,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84; 趙敏, 「高麗 太祖의 對豪族政策」,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2. 연구 성과 검토 및 연구방법

지금까지의 기인제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기원설에 대한 연구와 시대별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기인의 역할과 대우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즉, 太祖의 지방 세력에 대한 회유와 견제를 위한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거나,²⁾ 기인제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기인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는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³⁾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인제의 기원을 新羅 上守吏 制度에서 始原하여 朝鮮中葉 大同法이 실시될 때까지 존재한 것으로 이해하여 변천과정을 考察하거나,⁴⁾ 기인제의 기원을 『三國遺事』의 新羅 安吉과 車得公 說話를 근거로 하여 기인제의 新羅起源說을 주장하고 기인의 성격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다.⁵⁾

한편, 기인제의 신라기원설을 반박하고, 고려사회의 對服屬民關係에 주목하여 지방 세력이 중앙에 投降·復屬되어가는 과정에 근거하여 高麗起源說을 주장하였다.⁶⁾ 또 기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鄉吏와 관련하여 기인의 기원문제와 기인의 성격변화 및 職役과 대우에 대하여 살펴보고, 고려 태조 때 호족의 포섭책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고려기원설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⁷⁾ 아울러 고려 文宗때의 기인 選上和 立役規制의 내용을 규명하거나,⁸⁾ 국초에 投降한 호족세력에게 태조가 수여한 官階를 검토하고, 중앙에 選上된 기인대상자를 분석하여 기인의 사회적 역할과 대우를 검토한 연구 등이 있다.⁹⁾

이외에도 기인이 향리의 자제라는 신분적 지위 때문에 향리에 관한 연구에서도 향리의 신분변화를 다루면서 기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인을 중심으로 향

2) 韓祐勗,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 : 其人制起源說에 對한 檢討에 붙여서」(上·下), 『歷史學報』 12, 역사학회, 1960; 吳煥一, 「高麗時代 其人制度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3) 金成俊, 「其人之 性格에 대한 考察 (上)」, 『歷史學報』 10, 역사학회, 1958; 金成俊, 「其人之 性格에 대한 考察 (下)」,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1959; 金榮日, 「高麗時代의 其人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4) 이광린, 「其人制度의 變遷에 對하여」, 『學林』 3, 연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연구회, 1954.

5) 金成俊, 위의 논문, 1958, 1959.

6) 韓祐勗, 위의 논문, 1960.

7) 吳煥一, 위의 논문, 1982.

8) 韓祐勗, 「麗初의 其人選上規制」, 『歷史學報』 14, 역사학회, 1961.

9) 金榮日, 위의 논문, 1990.

리의 지위를 살펴보거나¹⁰⁾ 향리의 자제로서 신분적 지위를 보장받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도 하였다.¹¹⁾ 또, 문종 31년의 其人選上規定을 통하여 증견 향리가 기인으로 선상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²⁾ 아울러 중앙정부의 향리에 대한 통제책을 중심으로 기인제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고려 전기 기인제의 기원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정치적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고려 후기 기인역의 변화 과정에 보이는 苦役化 내지는 賤役化되었다고만 언급할 뿐, 기인의 지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역이었으며 고려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그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고려시대 기인제의 기능에 대한 변화와 활용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高麗史』, 『高麗史節要』의 기인에 대한 기사를 토대로 기인제의 기원과 고려 전기의 기능 및 고려왕조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 고려 후기에 이르러 급변하는 기인제의 기능과 기인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태조의 호족회유정책을 살펴보고 고려왕조가 기인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왕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기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향리의 신분변화를 고려 정부의 왕권강화책과 鄉村支配體制의 개편을 통해 살펴보고 여러 사료를 기반으로 고려 전기 기인의 대상자와 其人役, 그에 대한 대우 등의 변화상을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고려 후기 무신정권과 몽골의 침입에 의한 사회 변화가 기인의役に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고려 후기의 혼란스러운 사회가 지방의 향리세력에게 미친 영향과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기인의 신분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기인의 지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계층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10) 金美旻, 「高麗時代 鄉吏의 地位」, 『경주사학』 1, 경주사학회, 1982.

11) 朴淳我, 「高麗後期 鄉吏層의 避役」,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12) 羅恪淳, 「高麗鄉吏의 身分의 特性과 그 變化」, 『사학연구』 45, 한국사학회, 1992.

13) 朴倣瑩, 「高麗前期 鄉吏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규명함으로써 고려시대의 其人役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중앙정부의 기인 운영 방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운영되었던 기인제가 고려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II. 고려 전기 其人制의 시행과 운영

1. 기인제의 시행 목적

고려시대 지방 세력에 대한 牽制策의 하나로서 기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기인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신라기원설과 고려기원설이라는 두 가지 기원설이 있다.¹⁴⁾ 아직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기인제의 시행 목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겠다.

태조는 後百濟 神劔과의 一利川 戰鬪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혼란스러웠던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936).¹⁵⁾ 하지만 태조가 처음부터 지방호족세력을 제압하여 단일국가체제를 이룩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건국 초기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채, 호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호족연합정권적인 성격의 국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¹⁶⁾

<표 1>에서와 같이 태조 원년에만 무려 5건의 謀反事件¹⁷⁾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태조의 측근이었던 桓宣吉의 모반사건이었다.¹⁸⁾ 태조가 고려를 建國

14) 기인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기인제의 起源說에 대한 연구로는 李光麟과 金成俊이 『三國遺事』의 안길과 車得公에 관한 기사를 토대로 안길의 上守를 기인과 동일시하여 상수리제 도에서 기원한다는 신라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韓祐勳은 古代國家 成長過程에 있어서 대립적인 세력 즉 服屬民이 중앙에 투항·복속되어가는 과정을 검토하여 고려기원설을 주장하였고, 吳煥一 역시 고려 초 投降服屬한 호족들에 대한 包攝措置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고려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기인제의 기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金成俊,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1985; 吳煥一, 「高麗時代 其人制度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이광린, 「其人制度의 變遷에 對하여」, 『學林』 3, 연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연구회, 1954; 韓祐勳,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 : 其人制 起源說에 對한 檢討에 對하여」(上·下), 『歷史學報』 12, 역사학회, 1960.

15)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2 太祖 19年 丙申年 秋九月.

16) 채수환, 「王建的 高麗建國 過程에 있어서 豪族勢力」, 『白山學報』 82, 백산학회, 2008, 125-133쪽; 嚴成鎔, 앞의 논문, 1985, 4쪽; 兪炳基, 앞의 논문, 1984, 43쪽.

17)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元年 6月. “己巳 馬軍大將軍伊昕巖 謀叛棄市.”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元年 8月. “癸亥 以熊運等十餘州縣 叛附百濟 命前侍中金行濤爲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元年 9月. “乙酉 徇軍吏林春吉等 謀叛伏誅.”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元年 10月. “辛酉 青州帥波珍粲陳瑄 與其弟宜長 謀叛伏誅.”

18) 『高麗史』 卷127 列傳40 叛逆1 桓宣吉. “桓宣吉 與其弟香寔 俱事太祖 有翊戴功 太祖 拜宣吉 馬軍將軍 委以腹心 常令率精銳宿衛 其妻謂曰 子 才力過人 士卒服從 又有大功 而政柄在人 可不慎乎 宣吉 心然之 遂陰結兵士 欲伺隙爲變 馬軍將卜智諫 知之 密告太祖 以跡未形 不納 一日 太祖

한 것이 6월인데 태조 원년에 이렇게 많은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측근조차 모반을 꾀할 정도라면 太祖即位 初의 왕권은 미약한 상태였다.

<표 1> 太祖 元年의 謀反事件

이름	시기	직위
桓宣吉	태조 원년 6월 庚申	馬軍將軍
伊昕巖	태조 원년 6월 己巳	馬軍大將軍
熊州·運州 등 10여 개의 주현	태조 원년 8월 癸亥	
林春吉	태조 원년 9월 乙酉	徇軍吏
陳瑄·宣長	태조 원년 10월 辛酉	靑州將帥 波珍祭

자료 : 『高麗史』 世家

태조의 건국을 환영하지 않는 호족세력들은 당연히 고려왕조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호족세력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독립적인 세력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며 규모 역시 대단하였기 때문에 태조의 최우선 목표는 지방호족세력을 회유하는 것에 있었다. 지방호족세력의 회유를 위해 태조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태조는 혼인정책을 실시하여 유력한 호족들과 연합을 꾀하였다. 혼인정책은 호족들과 가장 쉽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호족의 입장에서 태조와의 通婚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구축과 세력 확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태조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뿐만이 아닌 고려왕조에 불복한 지역에서도 후비를 책봉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신라왕실 출신의 여자와도 혼인을 하였는데 태조 자신이 호족출신으로 다른 호족들을 지배하는데 권위가 필요했고, 신라왕실 출신과의 혼인으로 정당성을 부여했다. 혼인정책을 통해 지방 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동시에 고려왕실의 세력기반을 강화하였음은 태조가 무려 29명에 달하는 后妃를 거느리고 있는 데서도 쉽게 확인된다.¹⁹⁾

坐殿 與學士數人 商略國政 宣吉 與其徒五十餘人 持兵 自東廂 突入內庭 直欲犯之 太祖 策杖立厲聲叱之曰 朕 雖以汝輩之力至此 豈非天乎 天命已定 汝敢爾耶 宣吉 見太祖辭色自若 疑有伏甲 與衆走出 衛士 追及毬庭盡擒殺之 香寔 後至 知事敗亦亡 追兵殺之.”

19) 金東業, 앞의 논문, 1988, 19-27쪽.

태조는 왕유²⁰⁾와 왕순식²¹⁾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지방의 유력한 호족에게 賜姓 定策을 펴기도 하였는데, 이는 호족들의 왕실편입이라는 전략을 통한 지지획득이었다.

- ① 己酉에 여러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각 지방의 도적들이 내가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혹 변방에서 변란을 일으킬 것이 염려되어 단사를 나누어 파견하여 선물을 후하게 주고 말을 낮추어[重幣卑辭] 은혜를 베풀어 화의의 뜻을 보이도록 하였더니 귀순하는 자가 과연 많았다. 그러나 오직 甄萱만은 交聘하려고 하지 않았다.”²²⁾

사료 ①에서와 같이 지방의 호족들에게 사절을 보내어 선물을 후하게 하고 존중하는 重幣卑辭를 실시하였다. 태조가 단사를 나누어 보낸 지역은 대부분 신라 지역내의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지방 세력들이었다. 태조는 지방호족들의 환심을 얻어 후백제와의 군사적·외교적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고,²³⁾ 중폐비사의 성공은 지방 호족들의 歸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후백제에 대항할 만한 세력을 갖추지 못한 호족들은 觀望的 자세에 있다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즉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 곳으로 자신들을 依託해야 했다.²⁴⁾ 지방호족의 귀부는 왕권에 대한 위협 제거와 전투에 필요한 군사력 동원, 후삼국통일 수행 과정에 경제적·군사적인 안정을 가져와 통일전쟁 수행의 원동력이 되었다.²⁵⁾

태조의 후삼국통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방호족의 귀부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20)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王儒. “王儒 本姓名朴儒 字文行 光海州人 … 有功 遂賜姓王.”
21)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王順式. “王順式 溟州人 爲本州將軍 久不服 順式遂遣長子守元歸款 賜姓王.”
22)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元年 8月. “己酉 諭群臣曰 朕慮諸道寇賊聞朕初即位 或構邊患 分遣單使 重幣卑辭 以示惠和之意 歸附者果衆 獨甄萱不肯交聘.”
23) 權眞澈, 앞의 논문, 1997, 78-88쪽.
24) 嚴成鎔, 앞의 논문, 1985, 8-10쪽.
25) 具山祐, 「高麗 太祖代의 귀부 호족에 대한 정책과 향촌사회」, 『지역과 역사』 11, 부경역사연구소, 2002, 62쪽.

<표 2> 太祖代 歸附 豪族의 우대책

이름	귀부시기	귀부 전 지위	관계 제수	기타
尹瑄 ²⁶⁾	太祖元年	鵲岩城帥		
閔雄 ²⁷⁾	太祖3年	康州將軍	阿粲(一康)	子 一康을 인질로 보냄
元奉 ²⁸⁾	太祖5年	下枝縣將軍	元尹	
順式 ²⁹⁾	太祖5年	溟州將軍	大匡 元甫(長命) 大丞(官景)	아들을 보내 귀부 함, 子 王守元, 子 王長命, 小將 官景과 귀부
洪術 ³⁰⁾	太祖5年	眞寶城城主	元尹(王立)	子 王立을 보내 갑옷 30벌 바침
城達 ³¹⁾	太祖6年	命旨城將軍		弟 伊達·端林과 함께 귀부
良文 ³²⁾	太祖6年	碧珍郡將軍	本邑將軍(子 永) 元尹(圭奐)	생질 圭奐을 보내 귀부
能玄 ³³⁾	太祖8年	買曹城將軍		
能文 ³⁴⁾	太祖8年	高鬱府將軍		
興達 ³⁵⁾	太祖10年	高思曷伊城主		子 俊達에게 珍州, 雄達에게는 寒水, 玉達에게 長淺의 祿을 하사
善弼 ³⁶⁾	太祖13年	載巖城將軍		
萱達 ³⁷⁾	太祖13年	北彌秩夫城主		
龔直 ³⁸⁾	太祖15年	後百濟將軍	佐尹(咸舒)	子 英舒, 咸舒와 함께 귀부
朴英規 ³⁹⁾	太祖19年	後百濟將軍	佐丞	

자료 : 『高麗史』 世家와 列傳

- 26)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1年 8月. “庚戌 朔方鵲巖城帥尹瑄 來歸.”
- 27)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3年 春正月. “康州將軍閔雄 遣其子一康 爲質 拜一康阿粲 以卿行訓之妹 妻之 遣郎中春讓於康州 慰諭歸附.”
- 28)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5年 6月. “丁巳 下枝縣將軍元奉 來投.”
- 29)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5年 7月. “戊戌 溟州將軍順式 遣子降附.”
- 30)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5年 11月. “辛巳 眞寶城主洪術 遣使請降 遣元尹王儒卿含弼等 慰諭之.”
- 31)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6年 3月. “辛丑 命旨城將軍城達 與其弟伊達端林 來附.”
- 32)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6年 8月. “壬申 碧珍郡將軍良文 遣其甥圭奐 來降 拜圭奐元尹.”
- 33)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8年 9月. “甲寅 買曹城將軍能玄 遣使乞降.”

<표 2>에서 보면 태조는 귀부하는 호족과 그 자제들에게 官階를 제수하거나 祿을 하사하는 등의 우대책으로 그들을 포섭·회유하려고 노력하였다. 지속적으로 상대세력과의 유대관계를 다져 나갔으며, 아울러 그들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지배체제로 수용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⁴⁰⁾ 이것은 대립적인 두 세력 사이에 講和 또는 복속의 人的 담보로 파송·교환되어 완전예속을 의미하기보다는 대립적인 세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복속상태 또는 상호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⁴¹⁾ 지방호족들의 협조로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確保할 수 있었던 태조는 세력의 크기가 다른 지방호족들의 자발적인 인질선상을 이끌어 내는 정책적 우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⁴²⁾ 때문에 太祖代의 인질은 互惠의 의미로서의 인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② 개국 초기에 鄉吏의 자제를 뽑아서 서울에 人質로 삼고 또 그 고을의 사정을 물어 보는 고문으로 썼는데 이것을 其人이라고 하였다.⁴³⁾

사료 ②는 기인선상에 대한 『高麗史』 최초의 기록으로 기인제는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선발하여 인질로서 서울에 억류하고, 중앙의 향촌지배에 필요한 정치적 행사에 고문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아직 고려왕조에 동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⁴⁴⁾

결국 기인제는 고려 초 지방호족세력에 대한 포섭 및 견제,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귀부호족의 우대에 따른 지방호족의 충성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으며, 호족자제의 선상과 그에 대한 역할 부여에서 정치적 선점

34)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8年 10月. “己巳 高鬱府將軍能文 率士卒來投.”

35)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10年 8月. “丙戌 王狗康州高思葛伊城 城主興達歸款.”

36)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13年 春正月. “丁卯 載巖城將軍善弼 來投.”

37)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太祖 13年 2月. “北彌秩夫城主萱達 與南彌秩夫城主 來降.”

38)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2 太祖 15年 6月. “丙寅 百濟將軍龔直 來降.”

39)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2 太祖 19年 2月. “甄萱壻 將軍朴英規 請內附.”

40) 權眞澈, 앞의 논문, 1997, 108-109쪽.

41) 韓祐勳, 앞의 책, 1992, 54-56쪽.

42) 金東業, 앞의 논문, 1988, 29-30쪽.

43)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其人條. “國初 選鄉吏子弟 爲質於京 且備顧問其鄉之事 謂之其人.”

44) 權眞澈, 위의 논문, 1997, 105-108쪽.

을 획득하는 수단이었다.

2. 기인제의 운영 양상

고려의 향리층은 羅末麗初에 등장한 지방호족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지배체제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의 호족들은 회유정책에 동화되거나 혹은 고려왕조에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토착세력화 하였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향리계층으로 전환되어 갔다.⁴⁵⁾

태조 이후 고려 왕실은 왕권강화와 지방 통제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호족의 중앙 통제를 위하여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였다. 우선 광종은 호족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御軍府를 개편하고 奴婢按檢法을 실시하였으며, 科擧制의 실시와 지방호족의 숙청작업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⁴⁶⁾ 광종대의 왕권강화책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신분적인 성격을 官人的인 성격에서 地方吏의 성격으로 변질시켰다.⁴⁷⁾

이후 983년(성종 2)의 12목 설치의 지방행정상의 要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으로⁴⁸⁾ 지방통치를 위한 개편작업이었다. 12목의 지방관 파견과 더불어 이루어진 향리명칭의 변화는⁴⁹⁾ 지방민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의 행사와 호족세력을 억제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이다.⁵⁰⁾ 또 顯宗대에는 지방 세력에 대한 국가통치체제의 편입을 구체화하였다. 1018년(현종 9) 지방행정 단위별로 丁의 수에 따른 향리 정원을 규정함으로써,⁵¹⁾ 성종 2년의 개혁에서 보이지 않았던 吏職을 증설하고 향리체

45) 徐權基, 「高麗 鄉吏制의 成立과 그 變遷에 對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2-6쪽.

46) 兪炳基, 앞의 논문, 1984, 56-64쪽.

47) 嚴成鎔, 앞의 논문, 1985, 50-51쪽.

48) 『高麗史』卷3 世家3 成宗 2年 癸未年 2月. “始置十二牧.”

49) 『高麗史』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條. “成宗二年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郎中爲戶正 員外郎爲副戶正 執事爲史 兵部卿爲兵正 筵上爲副兵正 維乃爲兵史 倉部卿爲倉正.”

50) 徐權基, 위의 논문, 1983, 9-10쪽.

51) 『高麗史』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條. “顯宗九年定 凡州府郡縣 千丁以上 戶長八人 副戶長四人 兵正副兵正各二人 倉正副倉正各二人 史二十人 兵倉史各十人 公須食祿史各六人 客舍藥店司獄史各四人 五百丁以上 戶長七人 副戶長二人 兵正副兵正倉正副倉正各二人 史十四人 兵倉史各八人 公須食祿史各四人 客舍藥店司獄史各二人 三百丁以上 戶長五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二人 史十人 兵倉史各六人 公須食祿史各四人 客舍藥店司獄史各二人 百丁以下 戶長四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一人 史六人 兵倉史各四人 公須食祿史各三人 客舍藥店史各一人 東西諸防禦使鎮將縣令官千丁以上 戶長六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二人 史十人 兵倉史各六人 公須史各四人 客舍藥店

제를 갖추었다. 이것은 라말려초의 장군·성주 등의 재지 세력을 정치세력 속으로 흡수하여, 호장 1인의 독자적인 지방통치를 견제함으로써 집단적인 운영체제의 실시에 따른 권력 분산이었다.⁵²⁾ 같은 해에 시행된 향리의 공복제 실시⁵³⁾ 또한 리직을 새로운 官階질서 속에 편입시키려는 의도였다.⁵⁴⁾

현종대에 개편된 향리직제를 성종대의 향리직제와 비교하면 새로운 직임의 보강을 통한 직제의 세분화, 전문화를 보다 높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향리의 각 직임 정원이 확정된 것은 향촌사회의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가 직임에 따른 향리층의 정원을 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전 시기에는 향리층이 국가권력에 구애되지 않고 각 직임의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촌사회가 향촌지배층에 장악되어 있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현종대에 향리 정원의 제정은 성종대 이후 1018년(현종 9)까지 향리층의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향촌지배층과 국가권력 간의 치열한 공방전의 결과가 국가권력의 우위로 결정되었음을 말해준다.⁵⁵⁾

고려의 지방제도 실시와 향리제 정비과정은 향리층을 지방사회의 중간지배층으로 귀착시킴으로써 중앙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변화를 가져왔다. 고려 전기 향리 역할을 다음의 사료로 확인하겠다.

- ③ 가을 9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刑政이 적중하지 않으니 하늘의 견책이 나타났다. 근래에 관리의 政事가 가혹함이 많아 미납한 조세와 전에 빌려 준 것을 단속하여 거두기에 한이 없으니 끝내 재변이 있게 하였다. 너희들 郡·縣 吏屬은 짐의 말을 경청하여 그 미납한 조세는 5년까지 한하여 기일을 늦추어 주고,公私의 오래된 채무는 또한 묻지 말라.” 하였다.⁵⁶⁾

司獄史各二人 百丁以上 戶長四人 副戶長以下 並同千丁以上州縣 百丁以下 戶長二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一人 史六人 兵倉史各四人 公須客舍藥店司獄史各二人.”

52) 朴倣瑩, 앞의 논문, 2003, 19-21쪽.

53) 『高麗史』卷72 志26 輿服 冠服 長吏公服條. “顯宗九年 定長吏公服 州府郡縣戶長 紫衫 副戶長以下 兵倉正以上 緋衫 戶正以下 司獄副正以上 綠衫 并靴笏 州府郡縣史 深青衫 兵倉史諸壇史 天碧衫 無靴笏.”

54) 成宗과 顯宗代の 鄉村支配體制의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具山祐, 「高麗 成宗代の 鄉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사회적 갈등」, 『韓國文化研究』 6,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3; 具山祐, 「高麗 顯宗代 鄉村支配體制 개편의 배경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1, 한국중세사학회, 1994; 徐權基, 앞의 논문, 1983; 李明仙, 「고려전기 향리의 위상과 기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55) 具山祐, 위의 논문, 1993, 113-117쪽.

56) 『高麗史節要』卷13 明宗光孝大王 25年 秋9月. “秋九月 詔曰 刑政不中 謫見于天 比來 吏政多苛 逋租宿貸 督數無已 致有變異 其爾郡縣史 敬聽朕言 其逋租 限五年寬假 公私宿債 亦所不問.”

- ④ 明宗 18년 3월에 명령을 내려 “여러 주, 부, 군, 현의 백성들은 각각 貢役이 있는데 근래에 지방 관료들이 사령에게 사사로이 청탁하여 役價를 징수하고 바쳐야 할 貢賦는 해당 연도가 지나가면 면제케 하니 하급관리의 무리들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니 役이 고르지 않게 되고 있다. 공물 바칠 집의 백성들이 이런 이유로 흩어져 떠도니, 각도에 파견된 使者들은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들어서 이와 같은 관리들의 죄를 짐에게 보고하고 나머지 하급관리들은 刑法에 따라 직책에서 쫓아내어 貢役을 균등하게 부과하도록 할 것이다.”⁵⁷⁾
- ⑤ 세상 풍속이 선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각기 소원에 따라 사찰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수가 심히 많습시다. 또 서울과 지방의 僧徒들은 사사로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자 다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널리 주, 군의 長吏들에게 권유하여 백성들을 징발하여 公役보다도 급하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바라건대 이런 일을 엄금하여 백성들의 勞役을 면제하여 주십시오.⁵⁸⁾
- ⑥ 成宗 7년에 劄하기를 “각 도의 轉運使 및 지방관들이 무릇 백성의 고소를 즐겨 듣지 않고 모두 京官에 가서 판결을 취하고자 한다. 이제부터는 고소하여 넘긴 자와 주, 현의 長吏로서 처벌하지 않는 자는 죄를 부과한다.”⁵⁹⁾

사료 ③~⑥은 모두 고려 전기 향리의 직역에 관한 기사로 중앙으로부터 부여된 役務 내용에 대한 기사이다. 각각의 사료를 살펴보면 첫째, 향리는 아직 바치지 않은 組를 5년까지 기일을 늦추어 주는 등 조세징수의 역무를 하고 있고 둘째, 공역을 수행함에 吏들이 불공평한 역을 부과하는 등 공부의 징수 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승도들의 불사축조에 郡縣長吏로 하여금 백성의 力役을 동원하는 기사에서 향리들이 노동력 동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넷째, 중형에 대한 처리를 지방관이 직접 다루지 않고 향리들이 다스리는 등 재판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사료의 성격으로 보아 향리층은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역무를 수행하면서 지방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위로 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방 세력이 국초부터 지녀왔던 독자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57)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條. “明宗十八年三月 下制 諸州府郡縣百姓 各有貢役 邇來 守土員僚 斜屬使令 徵取役價 其貢賦 經年除免 掾吏之徒 並違此式 役之不均 貢戶之民 因此逃流 各道使者 巡行按問 如此官 以罪奏聞 其餘掾吏 依刑黜職 令均貢役.”

58) 『高麗史』 卷93 列傳6 崔承老傳. “世俗以種善爲名 各隨所願 營造佛宇 其數甚多 又有中外僧徒 欲爲私住之所 競行營造 普勸州郡長吏 徵民役使 急於公役 民甚苦之 願嚴加禁斷 以除百姓勞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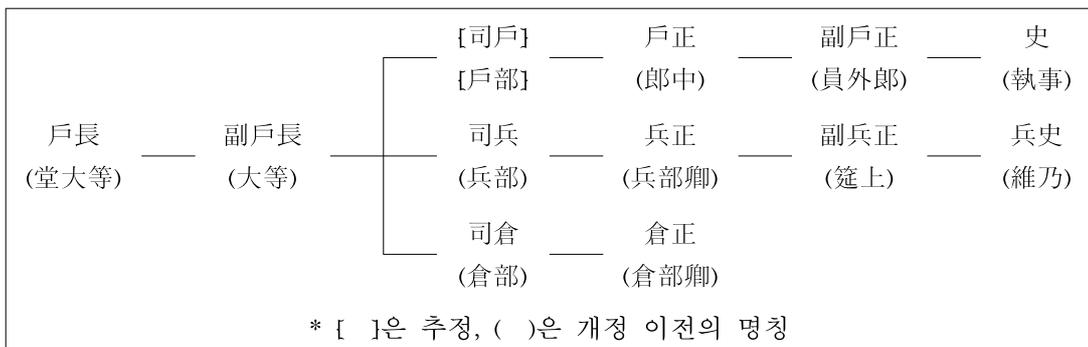
59)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條. “成宗 七年 判 諸道轉運使及外官 凡百姓告訴 不肯聽理 皆令就決於京官 自今越告人 及州縣長吏不處決者 科罪.”

광종의 왕권강화책과 성종~현종대의 향촌지배체제 개편으로 인한 향리 지위의 변화는 호족세력의 포섭 및 견제로써 시행된 기인의 신분적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 ⑦ 文宗 31년에 判하여 무릇 其人은 1,000丁 이상의 州는 足丁으로 하여 나이 40 이하 30 이상의 자의 選上을 허락하고 1,000丁 이하의 州는 半足丁으로 兵倉正 이하 副兵倉正 이상을 勿論하고 富強 징직한 자를 選上하게 하고 그 足丁은 15년을 限定하고 半丁은 10년을 限定하여 立役케 하며 半丁이 7년에 이르고 足丁이 10년에 이르면 同正職을 허락하고 役이 차면 職을 더하게 하였다.⁶⁰⁾

사료 ⑦은 文宗때의 기인의 選上規制로써 기인이 일정한 役을 지니고 입역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同正職을 수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향리 자제를 선발하여 인질을 삼고 그 고을의 고문을 담당하게 하였던 사료 ②의 기록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사료 ②의 기록에서는 기인에 대하여 身役의 조건이 없었으나, 사료 ⑦의 기록에서는 신역의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고려왕조의 왕권강화와 향촌지배체제의 개편으로 향리세력의 약화와 함께 기인 지위의 격하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成宗 2년 관직체계의 정비⁶¹⁾



또, 위의 사료는 기인 선상 대상자에 대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인 선상

60)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其人條. “文宗三十一年 判 凡其人 千丁以上州則足丁 年四十以下三十以上者 許選上 以下州則半足丁 勿論兵倉正以下副兵倉正以上 富強正直者 選上 其足丁 限十五年 半丁 限十年立役 半丁至七年 足丁至十年 許同正職 役滿加職.”

61)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條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 탐구당, 1993, 32-34쪽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대상자의 조건에서도 기인의 신분변화를 찾을 수 있다. ‘兵倉正 이하 副兵倉正 이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종대에 와서는 戶長層이 선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사료 ②에서 국초에 지방호족이 자제를 上京시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초에 귀부호족인 호장층이 선상된 것과는 다르게 하위 직급의 향리를 선상하였다는 점이다. 호장층이 아닌 하위 직급의 향리를 선상하였다는 것은 기인제의 기능이 기존의 강력한 지방 세력에 대한 포섭 및 회유를 위한 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에 귀속되어 지방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는 其人役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⁶²⁾ 하지만 役에 대한 보상으로 동정직을 수여하고 있는 것은 기인제 자체가 향리의 회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의 유지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⑦은 기인의 신분 변화에 따른 기인 대상자의 조건으로 ‘1,000丁 이상의 州는 足丁⁶³⁾으로 나이 40 이하 30 이상의 자의 선상을 허락하고 1,000丁 이하의 州는 半足丁’으로, ‘兵倉正 이하 副兵倉正 이상’이며, ‘富强 징직한 자’라는 3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병창정 이하 부병창정 이상’에 대해서는 기인의 신분변화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언급했으므로 ‘1,000丁 이상의 州는 足丁으로 나이 40 이하 30 이상의 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같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丁과 足丁과 半足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⑧ 국가제도에 백성들이 16세가 되면 丁이 되어 처음으로 국역에 복무하며 60이 되어 늙으면 役을 면제하였다.⁶⁴⁾

⑨ 토지에는 役主가 없어 亡丁들이 많습니다. 백성에게 항심이 없으면 도망한 戶가 많습니다. 무릇 공부가 있으면 이내 남아 있는 백성에게 담당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살림이 나날이 쪼들리고 피폐해지는 바입니다. 마땅히 급전을 내리고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貢賦를 납부토록 하십시오.⁶⁵⁾

62) 朴俔鑿, 앞의 논문, 2003, 26-28쪽.

63) 足丁에 대해서는 1丁을 1명의 장정으로 보는 人丁說, 군사 1丁에게 주는 토지로 보는 田丁說, 1丁을 1丁戶로 보는 丁戶說, 丁과 戶를 동일시하는 戶說 등이 있다. 李仁哲, 「高麗時代 足丁·半丁의 新解釋」,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28-41쪽; 權斗奎, 「高麗時代 足丁과 半丁의 規模」, 『한국중세사연구』 5, 한국중세사학회, 1998, 5-20쪽.

64)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戶口條.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 而免役.”

65)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條. “田無役主 亡丁多矣 民無恒心 逃戶衆矣 凡有貢賦 仍令

⑩ 국가가 토지 17결을 1足丁으로 하여 군인 1丁에게 주는 것은 옛날의 토지와 조세제도로부터 전해온 법이다. 모든 軍戶들은 본래 連立한 것인데 이 토지를 남에게 빼앗긴 자가 신고하면 돌려주는 것을 허락한다. 또 간사한 무리들이 자식은 없으면서 閑人이라고 헛되이 자칭하고 토지에 連立되어 있는 것이 한없이 많으니 選軍別監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해 推刷하고 이로써 戍卒를 모집하고 역적들의 토지도 結을 계산하여 丁을 만들어 모집한 군사에게 또한 지급 할 것이다.⁶⁶⁾

사료 ⑧에서 丁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國役을 담당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丁을 役 의무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 ⑨에서는 田에 경작하는 자가 없어 亡丁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족정은 人丁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또, 사료 ⑩에서는 직접적으로 田 17結로 1足丁을 삼아 군인에게 1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丁이 田丁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⁷⁾

그런데 사료 ⑩의 ‘田十七結 爲一足丁 給軍一丁’ 기사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丁과 足丁의 의미가 같다면 ‘田十七結 爲一丁給軍’ 이라고 기록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사료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⑪ 오직 府兵만은 만 20세가 되면 비로소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한다.⁶⁸⁾

사료 ⑩의 국가에서 田 17결로 1足丁을 삼아 군인에게 1丁을 지급했다는 기사와 사료 ⑪의 府兵이 20세가 되면 田을 받았다는 기사의 비교를 통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國役 담당자 중에서 20세부터 60세 이하를 足丁으로, 16세부터 19세를 半足丁으로 구분하고 있다.⁶⁹⁾

遺民當之 此所以日益彫弊也 宜令賜給田 隨其多少 納其貢賦.”

66)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五軍條. “國家以田十七結 爲一足丁 給軍一丁 古者田賦之遺法也 凡軍戶 素所連立 爲人所奪者 許陳告還給 又奸詐之徒 雖無兒息 妄稱閑人 連立土田 無有限極 仰選軍別監 根究推刷 以募戍卒 其逆賊之田 計結爲丁 亦給募卒.”

67) 한우근은 人丁說과 田丁說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役에 대한 보상은 役義務 능력에 따른 것이 기준이 되며, 어떠한 일정 범위의 役 義務 능력자에 대한 칭호가 이들에게 보상되는 田地面積을 가리키는 칭호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韓祐勗, 앞의 논문, 1992, 99-107쪽).

68)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唯府兵 年滿二十始受 六十而還.”

69) 金成俊, 「其人의 性格」,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일조각, 1985, 65-68쪽.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사료 ⑦의 ‘1,000丁 이상의 州는 足丁으로 하여 나이 40 이하 30 이상의 자를 선상함을 허락하고 1,000丁 이하의 州는 半足丁’을 해석하여 문종 30년 기인선상규제에 나타난 기인 선상의 조건을 해석하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역을 담당하는 자가 1,000명 이상인 州는 20세부터 60세 이하의 役 의무자로 하여 나이 40 이하 30 이상 자의 선상을 허락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역을 담당하는 자가 1,000명 이하의 州는 16세부터 19세 이하의 役 의무자의 선상을 허락한다.’고 풀이된다.

또한 ‘富強 정직한 자’를 통해서 기운이 왕성하고 군세며 정직한 자가 선상대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인선상자들은 어떠한 役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 ⑫ 무릇 事審官을 파견하는 데는 其人 및 백성들의 추천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비록 추천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만일 조정에서 현달하여 여러 대의 문벌이던 아울러 구분하여 아될 것이며, 이전에 아침하여 바르지 못하거나 간사한 죄를 진 사람이라면 파견하지 말 것이다.⁷⁰⁾
- ⑬ 연속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오직 집안의 문서에서 허물을 조사하여 응시하게 한다. 부모의 상을 당한 자에게 대하여는 部, 坊, 里的 규정과 고향의 其人과 事審官處에 물어 조사한다.⁷¹⁾
- ⑭ 溟州 將軍 順式이 아들 長命을 보내어 군사 6백으로써 宿衛하게 하였다.⁷²⁾
- ⑮ 대개 前朝의 太祖가 三韓을 統一하고 土豪로서 戶長을 삼아 鄉職을 설치하고 이에 여러 郡의 향리 자손으로 하여금 ‘其人’이란 칭호로 순번을 나누어 시위하게 하니, 곧 옛날에 아들을 質子로 하는 뜻입니다.⁷³⁾

앞의 사료 ②에서는 기인이 출신 지방에 대한 顧問을 맡고 있었고, 사료 ⑫에서는 사심관의 파견에 기인의 舉望이 관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에서 서울

70) 『高麗史』卷75 志29 選舉3 銓注 事審官條. “凡差事審官 從其人百姓舉望 其舉望雖小 如朝廷顯達累代門閥者 並奏差 曾坐詔曲奸邪之罪者 勿差.”
 71) 『高麗史』卷73 志27 科目1 科舉條. “連次赴學者 只考家狀痕瑕 赴試 遭父母喪者 屬部坊里典 及本鄉其人事審官處問覈.”
 72) 『高麗史節要』卷1 太祖神聖大王 10年 8月. “溟州將軍順式 遣子長命 以卒六百 入宿衛”
 73) 『世祖實錄』卷3 世祖 3年 2月 丁酉. “蓋前朝太祖統一三韓 以土豪爲戶長 設鄉職 仍使諸郡吏之子孫 稱爲其人 分番侍衛 卽古之質子之意也.”

로의 역을 지니는 기인과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역을 지니는 사심관이 상호견제 기능이 확인된다. 또, 사료 ⑬에서 지방의 부모상을 당한 자의 赴擧에 기인과 사심관처의 의견이 우선됨을 알 수 있으며 사료 ⑭와 ⑮의 기록을 통하여 기인은 宿衛의 役을 지니고 있음도 확인된다.

한편, 기인은 국가에 대한 役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댓가로 일정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앞의 사료 ⑦과 다음의 기사는 기인역에 대한 댓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⑯ 顯宗 14년 閏 9월에 判하기를 “무릇 여러 주, 현의 의창의 법은 도전정(度田丁)의 수를 사용하여 1科 공전에서는 1결에 組 3두를, 2科 및 궁·사원, 양반전에서는 조 2두를, 3科 및 軍人·其人 戶丁에서는 조 1두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이미 규정되었다. 만일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굶주리면 이것으로써 급한 것을 구제하고, 가을에 갚도록 하되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⁷⁴⁾

사료 ⑦의 기사를 보면 기인은 족정은 15년의 입역기간을 정하여 놓고 10년 役, 반정은 10년의 입역기간을 정하여 놓고 7년 役을 마치면 동정직을 수여하고 입역기간을 완료하면 加職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의 동정직은 正職의 增額을 위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 實職이 아닌 散職으로 文班은 6品, 武班은 5품 이하의 官職에 설정되어 있었고, 南班, 吏屬, 향리, 僧官 등 관직체계 전 계통에 설정되어 있었다. 入仕者들에 대한 初入仕職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⁷⁵⁾ 役에 대한 댓가로 동정직을 수여받고 入仕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신분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다.⁷⁶⁾

또 사료 ⑯의 기사에서 기인이 토지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수급 토지는 其人田이거나, 기인이 동정직의 제수 및 役滿加職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토지이다.⁷⁷⁾ 때문에 기인은 사료 ⑩의 군인 1丁 田 17결을 지급하였다는 기록과 당시의 田柴支給規準을 참고하면⁷⁸⁾ 군인과 같은 최하급의 田柴를 받고 있어서 중앙관서

74)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常平義倉條. “顯宗十四年閏九月 判 凡諸州縣義倉之法 用都田丁數 收斂 一科公田一結 租三斗 二科及宮寺院兩班田 租二斗 三科及軍其人戶丁 租一斗 已有成規 脫遇歲歉 百姓阻飢 以此救急 至秋還納 毋得濫費.”

75) 金光洙, 「高麗時代의 同正職」, 『歷史教育』 11·12, 歷史教育硏究會, 1969, 131-159쪽.

76) 朴淳我, 앞의 논문, 1996, 28-29쪽.

77) 金榮日, 앞의 논문, 1990, 24쪽.

78) 國史편찬위원회, 『한국사』 14, 탐구당, 1993, 21-97쪽 참조.

의 吏屬格으로 잡무 종사의 대가로 지급받았던 토지였다.⁷⁹⁾

기인이 役을 마치면 동정직을 제수하고 입역기간을 완료하면 加職하거나, 기인에게 토지가 지급되는 등 기인에 대한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은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 전기의 기인역은 그다지 畊 役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⁰⁾

79) 金成俊, 앞의 책, 1985, 73-74쪽.

80) 朴倣瑩, 앞의 논문, 2003, 37쪽; 徐權基, 앞의 논문, 1983, 23쪽.

Ⅲ. 고려 후기 其人制의 변질과 운영

1. 기인제의 변질과 파탄 원인

고려 후기는 무신정권기 이후부터 국왕옹립에 전횡을 가하거나 무신집권자들 간의 상호투쟁이 가속화 되었다.⁸¹⁾ 12세기 이후 확대되고 있었던 지방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명종은 監務를 파견하거나⁸²⁾ 무인을 지방관으로 파견하는 등⁸³⁾ 지방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모순과 원의 정치적 간섭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⑱ 毅王은 풍류과 색을 가까이 하고 놀기를 좋아하였다. 忠肅公 文克謙이 이때 正言이었는데 疏를 올려서 간절하게 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경인년 가을에 이르러 무신이 난을 꾸며 임금의 수레가 남쪽으로 옮겨 갔다.⁸⁴⁾

⑳ 왕이 의민을 공신으로 봉했는데 兩府의 문무백관이 모두 집으로 가서 축하했다. 의민이 銓注를 멋대로 하여 정치가 재물로 이루어지고 무리들이 서로 이어 맺어 버티므로 조정의 신하가 감히 누구도 꾸짖지 않았다. 백성의 거주지를 많이 차지하여 저택을 짓고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것에 기대어 모질게 빼앗으니 중앙과 지방이 두려워 떨었다.⁸⁵⁾

㉑ 김준이 4品 이상에게 차등 있게 銀을 내게 명령하여 國驢에 충당하였다. 또 사신을 보내어 부유한 백성에게 금과 은을 구하였는데 법이 가혹하고 준엄하여 백성들의 근심과 원망함이 많았다. 옛 제도에 팔관회를 闕樂하는 날에는 堂後와 門下 두 사람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는데 근래에는 전쟁과 흉년으로 인하여 폐지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⁸⁶⁾

81) 무신정권기를 거치며 귀족 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고 빈천한 사람이 관직에 오르는 등 기존의 신분질서에 혼란이 생겼다. 상층신분질서의 문란은 국가적인 엄격한 신분제의 해체로 이어졌다 (김현라, 『高麗後期 下層身分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110-112쪽).

82) 『高麗史』 卷19 世家19 明宗 2年 6月. “壬戌 … 左承宣李俊儀奏 諸州任內五十三縣 各置監務 安東任內甫州 以太子胎藏 陞爲縣令 固城縣加置尉一員 王 命群臣議之 以俊儀勢位既重 性且猜險 莫敢是非.”

83) 『高麗史』 卷19 世家19 明宗 3年 10月. “壬戌 制 自三京四都護八牧 以至郡縣館驛之任 並用武人.”

84) 崔滋, 『補閑集』 卷下. “毅王近聲色好遊 文忠肅公克謙 時爲正言 上疏切諫之不從 及庚寅秋 武臣構亂 乘輿南遷.”

85) 『高麗史』 卷128 列傳41 叛逆 李義旼. “王冊義旼爲功臣 兩府文武群臣 皆就第賀 義旼擅銓注 政以貨成 支黨連結 廷臣莫敢誰何 多占民居 大起第宅 奪人土田 肆其貪虐 中外震懼.”

사료 ⑰은 崔滋의 『補閑集』으로 국왕이 정무에서 벗어나 발생한 국가재정의 궁핍원인을 지적하는 내용이다.⁸⁷⁾ 또한 무인세력들은 공적 지위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불안정한 정치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적 경제기반을 확대하는데 몰두하였다. 사료 ⑱에서 이의민은 최고 집정자로서 불법적으로 넓은 범위의 토지탈점을 자행하여 사적 경제기반을 구축하였다. 사료 ⑲는 무신정권기 집권자인 김준이 4품 이상의 고관들에게 銀을 바치게 하여 國贖에 충당하였다. 또, 팔관회의 연회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廣庭宴禮都監을 설치하고 주군에서 물자를 바치게 하여 백성의 괴로움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중앙 지배층의 폐단은 지방관들과도 연계되었다.⁸⁸⁾

⑳ 김준의 家臣 高耳別監 文成柱가 준의 권세에 기대어 백성을 괴롭히는 바가 끊임없으니 어사대에 匿名으로 글을 붙여서 고소한 사람이 있었으나 준이 묻지 않고 그쳤다.⁸⁹⁾

사료 ㉑에서 보듯이 김준의 가신 문성주는 권력에 의지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어사대의 탄핵이 있었으나 김준에 의하여 무마되었는데, 지방관은 집권 무인세력들의 토지탈점과 농장운영 등 사적 지배기반의 확대에 결탁한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苛斂誅求로 백성의 처지를 더욱 곤궁하게 하였다.⁹⁰⁾ 이와 같은 지방관들의 탐학과 집권 무인세력의 비호 하에 자행되었던 폐단이나⁹¹⁾ 고려 후기 紅巾賊·倭寇의 침입과 같은 문제는 지방사회의 극심한 동

86) 『高麗史』 卷130 列傳43 叛逆 金俊. “俊令四品以上 出銀有差 以充國贖 又遣使 購富民金銀 法苛峻 民多愁怨 舊制 八關閱樂日 堂後門下二人 盛設宴 近因兵荒 廢之已久.”

87) 洪榮義, 『高麗末 政治史 研究』, 혜안, 2005, 15쪽.

88) 申安湜,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2002, 20-27쪽.

89) 『高麗史』 卷130 列傳43 叛逆 金俊. “俊家臣高耳別監文成柱 倚俊勢 剝民無所不至 有人帖匿名書于御史臺訴之 俊寢不問.”

90) 申安湜, 위의 책, 2002, 26-27쪽.

91)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에 있는 8월 2일과 8월 5일의 시를 살펴보면 도적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에는 이때의 농민항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5월에 최충헌이 朝臣을 많이 죽여 인심이 흉흉하고 두려워하므로 使者를 여러 도에 보내어 위안시켰다고 한 것으로 보아 최충헌의 집권을 전후한 정국의 불안정 속에 각지에서 농민항쟁의 불길이 치솟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金皓東, 『고려 무신정권시대 文人知識層의 현실대응』, 景仁文化社, 200-205쪽).

李奎報, 「八月二日」, 『東國李相國集』 卷6. “食罷禪房暫綴茶 半山紅日已西斜 坐呼階畔馴人鶴 臥聽門前警盜鵝 萬柳影中南北路 一溪聲外兩三家.”

요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후 몽골의 침략은 元의 간섭기에 토지와 수취체제의 모순으로 流亡民이 발생하고 연이은 民亂은 정치·사회적인 변동을 불러와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 동요하였다.

이러한 고려 후기의 정치동향은 향촌사회를 외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지방사회내의 기존질서의 변화는 중간지배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던 향리의 지위와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과거·서리직·군직·잡직 등을 통해 신분이 상승하거나, 유력 향리층의 중앙 진출은 향리役의 공백을 불러왔고, 잔존 향리층의 代役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었다.⁹²⁾

본래 고려의 양인신분 내에는 남반·서리·향리 등 중간계층이라 불리는 신분계층이 존재하였다. 중간계층에서 국가 통치체제의 구성과 운영에 가장 중요한 신분층은 향리였다. 이들은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인 동시에 중앙관료의 주요한 공급원이었다.⁹³⁾ 고려 전기의 향리는 조세징수, 공부징수, 노동력동원, 조곡관리, 재판업무보좌 등 중앙으로부터 부여된 役務를 수행하는 등 중앙행정의 보조자로서 상층부와 하층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⁹⁴⁾

그러나 무신정권에 의해 기존의 문벌귀족이 도태되자 무신정권은 외교와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관인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지방에 토착하여 행정업무를 관장하면서 문학적 교양을 쌓았던 ‘能文能吏’의 지방 향리층이 주목되었다.⁹⁵⁾ 또, 향리는 州縣軍의 장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고려 후기의 잦은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軍功으로 신분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다.⁹⁶⁾

이러한 향리층의 신분상승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신정권은 그들만으로

李奎報, 「八月五日聞群盜漸熾」, 『東國李相國集』 卷6. “群盜如蝟毛 生民灑腥血 郡守徒戎衣 望敵氣先奪 尙未掃蜂毒 況堪探虎血 嗟哉時無人 誰繼來嚼鐵 賊臂捷於猿 放箭若星瞥 賊脛迅於鹿 越山如電滅 士卒追不及 聚首空呀咄 幸能觸其鋒 物故十七八 婦女哭夫婿 鬻首吊枯骨 荒村早關門 白日行旅絕 今年況復旱 望雨甚於渴 田野皆赤土 未見苗芽茁 富屋已憂飢 貧者何由活 朱門日吐茵 百爵耳自熱 高堂森玉簪 密席擁羅襪 但識門燻灼 不憂國机 腐儒雖無知 流涕每嗚咽 嗟非肉食徒 未掉直言舌 已矣若爲陳 天陞無由謁.”

92) 洪承基, 『高麗社會史研究』, 一潮閣, 2001, 211-216쪽.

93) 주응영, 「고려조 신분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교육논집』 1, 역사교육학회, 1987, 167-168쪽.

94)金玉圭, 「高麗時代 鄉吏의 身分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4, 10-16쪽; 朴倣瑩, 앞의 논문, 2003, 38-44쪽; 李明仙, 앞의 논문, 2008, 27-52쪽.

95)金玉圭, 위의 논문, 1994, 19쪽.

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 탐구당문화사, 1993, 31-39쪽; 朴敬子, 「高麗時代 鄉吏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141쪽.

는 외교문제와 관료기구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관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를 자주 실시하였다. 귀족정치를 실시하였던 예종·인종·의종 3대 65년간에 설행된 과거횟수는 44회로, 취사인원이 1,248명에 달해 1년에 19.2인을 급제시켰다. 무신집권기인 명종부터 고종 때까지 89년간에 설행된 과거횟수는 57회로 1,974인을 급제시켜 1년에 22.2인을 취사시킨 셈이 된다.⁹⁷⁾ 이러한 사실은 무신정권 하에서 새로운 문신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의미하며, 가장 유력한 인적 자원집단이었던 향리층이 그 대상이 되어 그 자제들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다.⁹⁸⁾

둘째, 향리층의 중앙 진출은 落鄕 관인층에 의한 地方教育의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무신정권을 계기로 낙향한 관인층들에 의하여 지방교육이 육성되었고, 향리층의 과거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⁹⁹⁾

셋째, 향리층의 경제적 기반 역시 중앙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향리들 중에는 자신들의 농장을 소유하여 직접 경작하는 中小地主, 혹은 自營農民들이 많았다. 향리출신 중앙 진출자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활용하였다.¹⁰⁰⁾

넷째, 향리는 州縣軍의 將校職을 겸하고 있었다. 농민이나 천민의 亂과 왜구의 침입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지방민의 동원이 불가피 하였는데 지방군의 인솔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軍功으로 신분상승이 이루어졌다. 또한 添設職의 설치는 향리의 신분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¹⁰¹⁾

그러나 중앙으로 진출한 호장층의 신분상승과 달리 일반 향리층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향리층은 크게 두 계층으로 구별되었는데, 가문의 크기와 현실적인 지위에 따라 상층의 지위를 가진 호장층과 일반 향리층으로

97) 吳闡猷는 海州사람으로 대대로 주의 향리 벼슬을 한 인물로 명종 19년에 司馬試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여 5품에까지 올랐다. 이처럼 무신정권 시기에 지방 향리층의 과거를 통한 중앙 진출은 매우 활발하였다. 향리층의 중앙 진출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朴敬子, 앞의 논문, 1986; 金玉圭, 앞의 논문, 1994.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출판부, 2003, 吳闡猷墓誌銘. “龍集著雍淹茂南呂之月工部郎中吳君卒于私第嗚呼眞古之遺直者歟有或以官不稱意爲慊者予謂之曰士起鄉閭徒步入京師刷刷濯鱗歷官中外至登五品斯非人所皆得者何謂慊哉君諱闡猷海州人也版籍世皆爲州吏考某爲州副司戶外祖某亦其州人也爲權司戶君早博學工文詞越己酉歲舉司馬試中之遂入大學又於甲寅舉春場中之將赴試也夢捉一龜因假以爲名先放榜一日試官夢一龜告曰所與一時成功輩皆已第矣而予獨見擯試官皆驚悟於擯中暗求之擢爲丙首及榜出酒君也.”

9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 탐구당, 1993, 31-32쪽.

99) 金玉圭, 앞의 논문, 1994, 22-23쪽.

100) 朴敬子, 위의 논문, 1986, 141쪽.

101) 羅恪淳, 앞의 논문 1992, 67쪽; 朴敬子, 위의 논문, 1992, 145쪽,

구분되었다.¹⁰²⁾

㉑ 9월에 몽골 병사가 온수군을 포위하였다. 郡의 관리 玄呂 등이 문을 열고 출전하여 大敗시키고, 2명의 목을 베었다. 화살과 돌에 맞아 죽은 자가 2백여 명이고, 획득한 병장기가 매우 많았다. 왕이 그 군의 성황신이 몰래 도와준 공이 있다 하여 神號를 加封하고, 현령을 郡의 戶長으로 하였다.¹⁰³⁾

사료 ㉑을 살펴보면 몽골군의 침입시 군의 아전인 현령 등은 출전하여 몽골군을 이긴 군공으로 일반 향리에서 호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앞의 사료 ㉑에서 보이는 기인선상대상자 중 호장층이 제외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같은 향리이지만 호장층과 일반 향리층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향리제의 운영상에서 일정한 단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호장층과 일반 향리층의 신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앙으로 진출하는 호장층과는 반대로 잔존 향리층은 상대적인 신분하락을 겪게 되어 고역화된 향역을 담당하게 된다.

신분이란 전근대 국가에 공통된 것으로 국가의 지배체제 속에서 법에 의해 규정되어 고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리킨다. 고려왕조는 신분제 사회로 양인에게 국역부담을 지우는 대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원칙상 인정해 주었다.¹⁰⁴⁾

그러나 부과된 역이 고역이게 되면 누구나 그 역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역을 세습시키면서 해당 역은 賤視되고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때문에 법제상 양인의 신분에 맞는 役의 존재와는 다른 身良役賤의 현상이 증가하였다. 물론 그들의 역이 양인의 역이므로 법제상 신량역천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상 고역을 세습함으로써 신량역천이 존재하게 되었다.¹⁰⁵⁾

고려후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향리층의 신분변화는 향리와 밀

102) 羅恪淳, 위의 논문 1992, 63-64쪽.

103) 『高麗史節要』卷26 高宗安孝大王 三 23年 9月. “九月 蒙兵 圍溫水郡 郡吏玄呂等 開門出戰 大敗之 斬首二級 中矢石死者 二百餘人 所獲兵仗 甚多 王 以其郡城隍神 有密祐之功 加封神號 以呂爲郡戶長.”

104) 권영국, 「신분구조와 직역」, 『한국역사입문』 2, 풀빛, 1995, 208-210쪽.

105) 劉承源, 「朝鮮初期의 ‘身良役賤’階層 : 稱干稱尺者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73.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정직을 제수 받거나, 토지가 지급되는 등 기인에게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던 고려 전기와는 달리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일반 양인의 계층에서 丁吏·雜尺¹⁰⁶⁾과 같은 신분상의 하락을 가져왔다.¹⁰⁷⁾

이러한 현상에 따라 본래의 역에서 벗어나는 기인의 존재양상을 토대로 기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丁吏를 살펴 기인의 처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② 丁吏는 대개 丁壯인 남자로 처음 吏에 배치된 자이다. 예전의 說에는 頂禮라고도 하였는데 대개 이것은 말하는 소리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오르면 吏로 삼고, 吏에 등용된 이후에 관직을 준다. 守官 이하에는 각각 정리를 주어 사령으로 갖추었는데, 관품에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¹⁰⁸⁾

③ 烈王 22년 5월에 中贊 洪子藩이 백성의 일을 편하게 할 조항을 올렸다. … “出使하는 人員이 丁吏를 거느리고 上守하는데 이르는 주, 현에서 모두 선물을 전하는 것이 있어 이것을 例物이라고 하니 또한 금지하게 하십시오.”하였다.¹⁰⁹⁾

정리는 각 관아의 말단 吏屬으로서¹¹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役使되었던 존재였다. 부족한 지방향리를 丁吏의 일부를 귀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리가 향리이거나 향리의 자체임을 추측할 수 있다.¹¹¹⁾ 사료 ②의 『高麗圖經』에서 정리는 일정 기간 입역 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¹¹²⁾ 사료 ③에서 출사하는 자가 정리를 거느리고 지방을 상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소임은 관원의 使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106) 오일순은 고려 전기 특수한 행정구역으로서 津·驛·鄉·部·曲·莊·處·所 등의 주문은 군현민과 구별되면서 잡척층을 이루었으며, 이들은 교통·운수기관의 운영이나 둔전·왕실전·사원전 등의 경작, 수공업품 생산 등에 관련된 신역을 담당하였다고 말하고 있다(오일순, 『高麗時代 役制와 身分制 變動』, 혜안, 2000, 56쪽).

107) 창왕 즉위년(1388) 10월 憲司에서 올린 상서문에서는 幕士·주선의 혁파가 기인과 같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막사는 잡류의 일종으로서 守官署·供驛署·尙舍局에 배치되어 張設의 임무를 담당하였다(洪承基, 『高麗時代의 雜類』, 『歷史學報』 57, 歷史學會, 1973, 61쪽).

108) 『高麗圖經』 卷21 屯隸. “丁吏 蓋丁壯之人 初置吏者也 舊說轉爲頂禮 蓋是語音訛謬 自此升補爲吏 由吏而後授官 自令官而下 各給丁吏 以備使令 視官品而爲多寡之差.”

109) 『高麗史』 卷84 志38 刑法 職制條. “忠烈王 二十二年五月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 出使人員 將丁吏上守 所至州縣 皆有贈遺 謂之例物 亦令禁止.”

110) 洪承基, 앞의 책, 2001, 145-183쪽.

111) 『高麗史』 卷84 志38 刑法 職制條, 3條. “二十二年五月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 諸州縣及鄉所 部曲人吏 無一戶者多矣 外吏 依勢避役者 悉令歸鄉 丁吏 亦令減數歸還.”

112) 정리에게 입역 후 관직에 나아가는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인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오일순, 앞의 책, 2000, 63-65쪽).

것을 알 수 있다.¹¹³⁾

⑭ 前朝의 제도에는 身良役賤인 자는 모두 그 女孫에게 역이 없으니, 丁吏·驛吏의 딸이 良夫에게 시집가면 즉시 良人이고, 同類에게 시집가면 곧 그 役을 세웠다. 鹽干·津尺의 딸도 또한 같으며, 수군의 여손도 마땅히 干尺의 딸과 같다.¹¹⁴⁾

사료 ⑭는 고려의 丁吏에 대한 기록으로 신랑역천자는 그 역이 女孫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양인에게 시집가면 양인이 된다고 하여, 정리는 양인과 구별되는 신랑역천자임을 말하고 있다.¹¹⁵⁾ 이는 정리가 양인의 신분이면서 일반 양인과 노비의 중간에 위치하는 신분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료를 통해서 정리는 기인과 마찬가지로 관부사령의 역을 수행하고 미입사직으로 역을 마친 후에 입사되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역을 지니는 등 기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정리 역시 고려 후기에 이르러 신랑역천 계층으로 추락하였다는 내용은 기인의 신분 역시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幕士는 고려 전기 末端吏職屬職으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을 지니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守宮署에 50명, 供驛署에 40명, 尙舍局에 40명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장막의 설치, 각 도의 역참 관리와 역마의 동원 등을 담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¹¹⁶⁾ 창왕대의 상소문에서 기인을 幕士·注選과 같이 혁파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¹¹⁷⁾ 이는 잡류직의 身役化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노예처럼 역사된다고 할 정도로 고역을 겪게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기인과 막사가 서울에 올라올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되고 폐단으로 인해 노예와 같아서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기록¹¹⁸⁾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이르러 기인

113) 洪承基, 위의 논문, 1973, 64쪽.

114) 조선초의 기록에서는 정리를 干尺과 驛吏와 함께 신랑역천자로 나타내고 있다. 『太宗實錄』 卷 27 太宗 14年 正月 己卯. “前朝之制 身良役賤者 皆不役其女孫 丁吏驛吏之女 嫁良夫卽爲良人 嫁同類乃立其役 鹽干津尺之女亦同 水軍女孫 宜與干尺之女同.”

115) 김현라는 정리와 역리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부의 업을 계승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김현라, 위의 논문, 2006, 105-106쪽).

116) 洪承基, 앞의 논문, 1973, 61-62쪽.

117)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條. “(辛禍 14年) 十月 憲司又上書曰 … 其人 分隸各處 役之如 奴隸 至有逋亡者 主司督京主人 日徵闕布 人一匹 主人不能償之 直趨州縣 倍數督徵 州郡凋弊 願自今 一切罷去 使還鄉里 其各殿之役 以近日革罷倉庫奴婢 代之 各司之役使者 亦以辨正都監屬公奴婢 充之 司設幕士注選之屬 亦皆革去 以安民生.”

118)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7月 丁未. “外吏上京從役 如其人幕士 注選軍之設 自有其任 法久弊生

과 막사는 비슷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양인의 신분이지만 노예와 같이 천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후대의 기록이지만 기인에 대하여 양인을 가지고 천역을 수행하게 하니 영구히 혁파하자는 건의¹¹⁹⁾는 기인이 고려 후기에 신랑역천으로 신분적 전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인역의 운영과 변화

12세기를 전후한 지배층의 토지침탈과 과도한 수취부담, 13세기 중엽 몽골의 침략은 국토와 촌락을 황폐하게 하여 많은 유망민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향촌 사회도 붕괴되고 향리의 권위와 세력은 향촌질서 붕괴와 함께 무너져 향역의 徭役化가 초래되었다.¹²⁰⁾ 고역화된 향역을 면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층 향리들이 우선하였고, 지방통치는 하급 향리들을 직접 운용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편제되는 향역은 고역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향리의 신분 자체도 천시되어 갔다.¹²¹⁾ 다음의 사료는 향리의 고역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㉕ 春正月 壬寅에 知密直司事 韓康을 충청도와 교주도에 보내어 군마의 草料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때 경상도 轉輸別監이 날짜를 정하여 빨리 실어나르도록 매우 급하게 독촉하므로 백성이 모두 도망가고 숨어 버렸다. 高丘縣의 관리는 기한이 늦어져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을 매었다.¹²²⁾

㉖ 忠惠王 後4년 7월에 각 도의 지난해의 공부를 추가하여 징수하였다. 餘美縣의 縣吏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자살하였다.¹²³⁾

役如奴隸 怨讟實多 自今一皆罷去.”

119)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5月 辛亥. “我太祖即位之初 下教謂 其人之設自有其任 法久弊生 役使如奴隸 不堪其苦 怨讟實多 今後一皆罷去 厥後復立其人 又加其額 迄今拘役 怨苦尤甚 今公處奴婢計以十萬 何用良人 勒令賤役乎 願其人依太祖之教 永罷之.”

120)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 7年 正月;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條;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條; 『高麗史』 卷118 列傳31 諸臣 趙浚.

12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3, 50-52쪽.

122)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 7年 正月. “春正月 壬寅 遣知密直司事韓康于忠清交州道 以備軍馬草料 時 慶尙道轉輸別監刻日 督飛輓甚急 民皆竄匿 高丘縣吏恐後期抵罪 自縊.”

123)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條. “忠惠王後四年七月 追徵各道往年貢賦 餘美縣吏 不堪其苦 遂自刎.”

위의 사료는 향리의 대표적인 역무인 공부 징수 기사이다. 사료 ㉕는 고구현의 향리가 기일까지 군마의 사료를 비축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사료 ㉖에서는 여미현의 향리는 貢賦 추징에 고통스러워 자살을 하고 있다. 사료 ㉕, ㉖의 기록은 모두 元간섭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의 사회경제적 조건 악화와 생산기반을 잃은 백성의 유망 등은 결국 鄕役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고려 전기와 달리 향역 수행에 대한 부담은 앞의 사료에서와 같은 일을 발생시켰다.¹²⁴⁾

때문에 향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향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避役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 과거를 통한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이었다.¹²⁵⁾

㉗ 恭愍王 12년 5월에 교하여 “근년에 外吏가 본래의 역을 면하기를 꾀하여 많이 들 雜科로써 出身하므로 鄕邑이 凋弊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다만 正科에 응시하는 것만 허락하고 諸業에는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하였다.¹²⁶⁾

㉘ 辛禡 9년 2월에 左司議 權近 등이 말하기를 “국가의 안위는 주와 군의 성쇠에 달려 있는데 근년 이래로 지방 주, 현의 吏의 무리들이 본래의 역을 면하고자 꾀하여 明書業, 地理業, 醫業, 律業을 한다고 칭하나 모두가 실제로 재주도 없이 출신하여 역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리가 날로 감소하여 공무를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 향리인즉 3丁 중 한 아들만 시험에 나갈 것을 허락하였다.¹²⁷⁾

사료 ㉗은 향리층의 잡과 응시자가 많아지자 향읍이 피폐하게 되자 응시 범위를 제술·명경과로 제한하여 향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료 ㉘은 權近이 지방

124) 朴淳我, 앞의 논문, 1996, 32-34쪽.

125) 고려시대 향리의 과거응시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제술과와 명경과의 경우 부호장 이상은 손자까지, 부호정 이상은 아들까지 응시할 수 있었으며, 잡과의 경우 양민도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 향리의 과거응시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3, 탐구당, 1993; 許興植, 『高麗科擧制度研究』, 一志社, 1992; 김용선, 「과거와 응시」, 『韓國史市民講座』 46, 일조각, 2010; 유호석, 「고려 과거제도의 성립」, 『韓國史市民講座』 46, 일조각, 2010.

126)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鄕職條. “恭愍王十二年五月 教 比年 外吏 規免本役 多以雜科 出身 以致鄕邑彫廢 自今 只許赴正科 毋令與於諸業.”

127)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鄕職條. “辛禡九年二月 左司議權近等言 國之安危係乎州郡盛衰 比年以來 外方州縣吏輩 規免本役 稱爲明書業地理業 醫律業 皆無實才 出身免役 故鄕吏日減 難支公務 … 鄕吏則三丁一子 許赴試.”

주현의 향리들이 잡과를 통한 피역으로 공무 집행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향리의 3자 중 1명만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의 향리들이 신분상승의 목적보다는 本役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잡과에 응시함으로써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관리로 출신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응시 외에도 향역을 면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군공을 통한 관직의 취득이 있었다. 향리는 지방 주현군의 장교직을 담당하였고 군직으로 중앙관직에 나아가거나, 군공을 통하여 출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1354년(공민왕 3)에 군공에 의한 첨설직의 남발은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¹²⁸⁾

과거를 통한 면역과 군공을 통한 관직의 취득 등 합법적인 면역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도 존재하였다.

㉔ 人物推考都監¹²⁹⁾의 녹사 裴悅과 朴菴을 海島에 유배시켰다. 각 道 州郡의 관리와 백성이 서울에 와서 숨어 권세에 기대어 役을 피하였는데 배열, 박장이 宰樞의牒을 받들어 조사하여 강제로 돌려보냈다.¹³⁰⁾

㉕ (忠烈王 24년) 이 해 정월에 忠宣王이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 “주, 부, 군, 현의 鄉吏와 백성이 권세에 의탁하여 軍不領散員으로 제수됨이 많거나 혹은 上典으로 入仕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관원을 업신여기며 시기하니 마땅히 按廉使와 소재 관청으로 하여금 직첩을 거두고 本役에 충당하도록 하라. 또한 領府의 隊尉, 隊正이 공이 없는데도 차례를 뛰어넘어 軍不領散員으로 제수되어 본래 부여된 직역을 피한다. 권세가에 기대어 지방에 橫行하고 역마에 함부로 올라가난한 백성을 침노하여 어지럽게 하니 또한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직첩을 거두고 본역에 충당하게 하라”하였다.¹³¹⁾

128) 『高麗史』 卷75 志29 選舉 銓注 添設職條. “恭愍王三年六月 六部判書摠郎 除政曹外 皆倍數添設各司三四品 亦皆添設 又於四十二都府 每領 添設中郎將郎將 各二人 別將散員各三人 以授之 謂之賞軍政 添設之職 始此.”

『高麗史』 卷133 列傳46 辛禡2年 正月. “攝事于太廟上尊號 以添設職 賞軍士 自奉翊通 憲至七八品 無筭.”

129) 인물추고도감의 기능은 유망민을 추쇄하는 것과 더불어 세가에 투탁해 있는 공노비에 대한 추쇄도 함께하였다(김현라, 앞의 논문, 2006, 126-128쪽).

130)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 3年 夏4月. “流人物推考都監錄事裴悅朴菴于海島 各道州郡吏民來匿京城付勢避役 悅菴承宰樞牒推勸勒還.”

131)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條. “是年正月 忠宣王即位下教曰 … 州府郡縣鄉吏百姓 依投權勢 多授軍不領散員 或入仕上典 侵漁百姓 陵冒官員 宜令按廉使 及所在官 收職牒 充本役 又領府隊尉隊正 無功 超授軍不領散員 謀避本領職役 付托勢家 橫行外方 濫乘驛馬 侵擾貧民 亦令有司收職牒 充本役.”

㉑ 忠肅王 12년에 교하기를 “우리나라의 鄉吏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는 역을 면하고 벼슬에 나갈 수 없는데 근래에 도망하여 권세에 의탁하고 함부로 중앙관직을 받고 또 자제들로 하여금 소재지 관청에 고하지도 않고 권세가에 의지하여 역을 면하기 때문에 안에는 분수에 넘치는 벼슬이 많고 지방에는 戶口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는 지방 관리 및 그의 자제는 본래의 역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중앙관직을 받은 자는 7품에 한하여 파직하고 향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하였다.¹³²⁾

㉒ 恭愍王 5년 6월에 교서를 내렸다. “향리와 역리, 공사의 노예가 규정된 부역에서 회피하기 위해 자기 멋대로 僧이 되어서 호구가 날로 줄어든다. 이제부터는 도첩을 받지 않는 자는 사사로이 머리를 깎지 말라”하였다.¹³³⁾

사료 ㉑는 직접적으로 향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군의 관리와 백성이 권세에 기대에 피역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인물추고도감에서 이를 조사하여 돌려보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료 ㉒과 ㉓에서 향리는 과거를 통해 관직을 취득하지 않으면 면역할 수 없으나 권세가에 의탁하여 京職을 받아 면역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향리들은 권세가에 의탁하여 散員이 되거나 京職으로 면역하거나 농장에 숨어 부역을 회피하였다. 또, 사료 ㉒처럼 고역화된 부역을 도피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승려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사료 ㉓에서 7품을 한정하여 파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조치는 본역에서 벗어난 향리가 많을수록 지방행정운영이 어려웠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지방의 본역으로 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¹³⁴⁾ 한편, 충렬왕과 충숙왕 때에도 유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의 사료가 그것이다.

㉓ 22년 5월에 中贊 洪子藩이 백성의 일을 편하게 할 조항을 올렸다. … “모든 州, 縣과 鄉, 所, 部曲에 人吏가 1戶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의 관리가 권세에 의탁하여 역을 회피하는 자는 모두 歸鄉을 명령하고 丁吏 또한 수를 감하여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소서.” 하였다.¹³⁵⁾

132)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條. “忠肅王十二年 教 本國鄉吏 非由科舉 不得免役從仕 近者 逋亡附勢 濫受京職 又令子弟 不告所在官司 投勢免役 內多濫職 外損戶口 今後 外吏及其子弟 毋得擅離本役 其受京職者 限七品 罷職從鄉.”

133) 『高麗史』 卷85 志39 刑法 禁令條. “恭愍王五年六月 下教 鄉驛吏 及公私奴隸 規逃賦役 擅自爲僧 戶口日蹙 自今 非受度牒者 毋得私剃.”

134) 朴淳我, 앞의 논문, 1996, 44-46쪽.

㉔ 忠肅王 5년 5월에 敎를 내리기를, “첫째 大尉王이 주, 현의 稅額이 날로 줄고 백성의 삶이 날로 쇠잔해짐을 염려하여 사신을 보내어 두루 살피고 貢賦를 고르게 정하도록 하였다. 지금 황폐한 땅에서 銀과 布를 징수하여 공물의 수량을 채우고 있으니 공부를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士民이 원망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황폐한 땅의 租는 징수하지 말 것이다. 다음으로 순방사가 정한 田稅는 해마다 주, 군들서 그 정액대로 收組하는데 권세가에서는 거부하고 내지 않으니 향리와 백성이 빚을 내어 그 수를 채워도 끝이 없어 생업을 잃고 유망한다. 세를 내지 않는 자는 권세와 지위가 있어도 피하지 말고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¹³⁶⁾

㉕ 浚이 또 同列의 앞에서 時務의 조항을 늘어놓고 말하였다. … “근래에 이 법이 한번 무너지니 守令은 그 주의 호구를 알지 못하고 按廉은 도의 호구를 알지 못하여 마땅히 병사를 징발하거나 역을 징발할 때 鄉吏가 속이고 가리어 뇌물을 받아들입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자는 면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가게 되니 가난하고 약한 戶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도망하여 곧 부유하고 건강한 戶가 대신 그 괴로움을 받게 되어 또한 가난하고 약해져서 도망칩니다. 그 징발을 맡은 자는 향리의 속이고 가리는 것에 분노하여 몹시 가혹한 형벌을 가하여 귀를 베고 코를 베는 등 끊임없이 향리 역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합니다.” 하였다.¹³⁷⁾

11세기부터 발생하는 유망민은 당시의 사회모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었다. 이후 12세기 초에는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었다고 할 정도로¹³⁸⁾ 유망민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1331년(충혜왕 원년) 4월의 기사를 살펴보면 주현의 역을 감당해야 하는 인민의 기록이 나타나는데,¹³⁹⁾ 여기서의 인민은 향리와 백성을 가

135) 『高麗史』 卷84 志38 刑法 職制條, 3條. “二十二年五月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 諸州縣及鄉所部曲人吏 無一戶者多矣 外吏 依勢避役者 悉令歸鄉 丁吏 亦令減數歸還.”

136)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條. “忠肅王五年五月 下敎 一 太尉王軫念州縣稅額日減 民生日殘 遣使巡訪 均定貢賦 今於荒田 徵銀及布 以充貢額 不惟貢賦無實 士民怨咨 自今 勿收荒田租 一 巡訪使所定田稅 每歲州郡 據額收租 權勢之家 拒而不納 鄉吏百姓 稱貸充數 無有紀極 失業流亡 其不納稅者 勿避權貴 糾察以聞.”

137) 『高麗史』 卷118 列傳31 諸臣 趙浚. “浚又率同列 條陳時務曰 … 近來此法一毀 守令不知其州之戶口 按廉不知一道之戶口 當徵兵調役之際 而鄉吏欺蔽 招納賄賂 富壯免而貧弱行 貧弱之戶不堪其苦而逃 則富壯之戶代受其苦 亦貧弱而逃矣 其任徵發者 憤鄉吏之欺蔽 痛加酷刑 割耳劓鼻 無所不至 鄉吏亦不堪其苦而逃矣.”

138)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卽位年 12月. “甲申 敎曰 惟我祖宗 經綸草昧 肇造邦家 累聖持守 以及寡人 今諸道州郡司牧 清廉憂恤者 十無一二 慕利釣名 有傷大體 好賄營私 殘害生民 流亡相繼 十室九空 朕甚痛焉.”

139) 『高麗史』 卷36 世家36 忠惠王 元年 夏4月. “忠惠王 元年 四月 … 而又比年間 本國州縣 當役人民 并官寺私奴婢人口 逃往遼陽瀋陽雙城女真等處 影避差役 散漫住坐 雖或差人前去 將欲推刷 所轄官司 并頭目人 擅自挾帶 當欄不與 甚爲未便.”

리키는 것으로 유망하는 주체에 향리층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러 주현 및 향, 부곡, 소에 향리가 본역을 피하여 1戶도 없는 곳이 있거나, 권세가가 납부하지 않은 조세를 대납하였던 향리와 백성이 동시에 유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이 시기의 권세가들이 권력을 빙자하여 남의 토지를 탈점하고, 특히 토지에 대한 田租를 납입하지 않아¹⁴⁰⁾ 모자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향리와 백성들이 빌려서 충당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료 ㉔와 같이 향리들은 고을의 백성과 함께 권세가가 거부하고 내지 않은 조세의 수취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만 하는 이중적 수탈에 놓이는 등의 고역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유망과 피역에 대한 정책과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⁴¹⁾

향역의 고역화와 더불어 향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인역 또한 고역화 되었다. 기인역이 고역으로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무신정권 이후 장기간의 토목공사와 이민족의 침입을 들 수 있다. 고려 후기 반란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개경의 시설물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몽골군의 침입 후 1249년(고종 36) 봄에 개경을 찾았을 때는 모두 텅 빈 폐허 상태였다고 할 만큼 정부시설물의 소실은 심각하였으며,¹⁴²⁾ 농토의 황폐화와 더불어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 역시 유망민화되었다. 1253년(고종 40)의 ‘남아 있는 백성들이 열에 두셋 밖에 안 된다.’는 기사와¹⁴³⁾ 1254년(고종 41)의 ‘몽고 군사에게 포로가 된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백여 명이나 된다.’¹⁴⁴⁾는 기사 등을 볼 때,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잦은 왜구의 침입과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면서 재차 궁궐과 도시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처럼 고려후기에

140)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條. “忠宣王二年十一月 宰樞議 遣採訪使于諸道 更定稅法 或曰今郡縣 田野盡闢 宜量田增賦 以贍國用 宰樞 恐其所占田園入官 事遂寢.”

141) 김현라, 앞의 논문, 2006, 45쪽.

142) 崔滋, 『補閑集』 卷下. “己酉仲春因事到古京 皆丘墟 有孤桐生大觀殿古址 已拱矣 及日暮子規啼西麓 不忍澹然 曉起見壁間有二絕 問重修都監胥吏 是誰作也 答云是副使安摺所書 其一曰 萬家煨燼一無遺 殿上生桐自底時 我老萬分觀再造 薰風琴用汝當支 二曰 不意皇都有子規 終宵啼月使人悲 潛思往事洩瀾泣 曉傍孤桐詠黍離 此詩雖非警策 卽事備詳可哀.”

143) 『高麗史節要』 卷17 高宗 40年 12月. “遣安慶公涓 如蒙古 初宰樞請遣涓 乞班師 王不允 參知政事崔璘 獨奏曰 愛子之情 無貴賤一也 然不幸有死別者矣 殿下何惜一子乎 今民之存者 十二三 蒙兵不還 則民失三農 皆投於彼 雖守一江華 何以爲國 王不得已而頷之.”

144) 『高麗史』 卷24 世家24 高宗 41年 12月. “甲午 崔璘 還奏曰 臣至陝州丹溪 見車羅大 言崔沆奉王出陸 則兵可罷 是歲 蒙兵所虜男女 無慮二十萬六千八百餘人 殺戮者 不可勝計 所經州郡 皆爲煨燼 自有蒙兵之亂 未有甚於此時也.”

는 개경의 궁궐과 시설물이 여러 차례 소실되었고, 소실된 궁궐 및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

<표 4> 고려 후기에 시행된 주요 토목공사

연 도	내 용
1253년(고종 40) 9월	승천부 백마산 아래 성곽을 쌓고 궁실을 영조.
1259년(고종 46) 2월	마리산 남쪽에 이궁 영조.
1259년(원종 즉위년) 11월	궁인 30頡을 징발하여 궁궐 신축.
1274년(원종 15) 정월	원나라에서 전함 3백 척의 건조를 감독.
1275년(충렬왕 1) 8월	제상궁을 철거하여 오대사를 수축.
1278년(충렬왕 4) 10월	수강궁 영조.
1280년(충렬왕 6) 6월	죽판궁을 확장한 신궁 완성.
1284년(충렬왕 10) 11월	신궁에 大殿을 신축.
1304년(충렬왕 30) 3월	梨峴新宮 완성.
1309년(충선왕 1) 3월	강안, 연경 양궁을 중수.
	이현신궁을 헐어냄.
	원나라에서 배 100척을 짓고 쌀 3천석을 수송.
1309년(충선왕 1) 11월	동·서 積倉을 축조.
1312년(충선왕 4) 7월	淑妃의 사택을 三峴에 신축.
1343년(충혜왕 4) 3월	三峴에 신궁을 건설.
1344년(충목왕 즉위년) 8월	삼현신궁을 헐어버리고 崇文館을 신축.
1357년(공민왕 6) 2월	남경에 궁궐을 건축.
1360년(공민왕 9) 7월	백악에 궁궐을 영조.
1366년(공민왕 15) 5월	공주의 영전을 왕륜사 동남에 일으킴.
1368년(공민왕 17) 5월	마암에 영전의 신축 공사 시작.
1370년(공민왕 19) 4월	영전에 관음전을 영조.
1370년(공민왕 19) 6월	왕륜사의 영전을 다시 수축.
1370년(공민왕 19) 8월	수창궁 옛 터를 살펴보고 궁궐 영조.
1370년(공민왕 19) 9월	영전을 헐고 고쳐 지음.
1372년(공민왕 21) 6월	수릉 영조.
1372년(공민왕 21) 7월	영전의 종루를 고쳐 지음.

자료 : 『高麗史』 世家

<표 4>의 고려 후기 토목공사는 주로 궁궐의 영조와 원의 명령에 의한 선박 건조인데, 궁궐 영조는 몽골 침입 이전의 무신들에 의해 불타버린 궁궐을 다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충렬왕 즉위 후에는 궁궐을 확장하거나 이궁을 건설하였으며,¹⁴⁵⁾ 공민왕대의 토목공사는 주로 노국공주 사후 공주의 영전 건설이었다.¹⁴⁶⁾ 특히 공민왕대에 이루어진 노국공주의 영전은 완공한지 2년 만에 마암으로 옮겨서 다시 짓게 하였으나, 3층의 대들보를 올리다가 인부 2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자¹⁴⁷⁾ 다시 왕륜사 옛터에 영전을 중수하는 등 빈번하게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때문에 노동력 징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¹⁴⁸⁾ 散職 가운데서 官職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同正職이나, 貢納 대상에서 제외된 所民 및 僧徒와 軍人 등을 요역 대상자로 力役に 동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¹⁴⁹⁾ 합법적인 노동력 징발을 위한 대상자는 기인에까지 미쳐, 이 시기에 본격적인 力役동원이 이루어졌다.

㉞ 高宗 43년 2월에 制하기를, “여러 도에서 병란을 겪고 피폐하게 되어 租賦가 줄어드니 주, 현들의 其人으로 하여금 휴한지를 경작케 하여 조세를 거두어 경비에 보태게 하라. 또 文武 3품 이하 權務 이상으로 하여금 丁夫를 차등 있게 내게 하여 梯浦와 瓦浦에 독을 쌓아서 左屯田으로 만들고 狸浦와 草浦는 右屯田으로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¹⁵⁰⁾

㉟ 辛未에 왕이 金文衍의 집에 있었는데 백관이 梨峴新宮에 모였다. 왕이 교서를

145)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10月. “己卯 … 是月 作離宮于馬堤山 名曰壽康 卽草屋之地.”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 6年 6月. “辛巳 新宮成 號曰膺慶 樓曰寒碧 門曰泰通 遣將軍朴義如元獻鷓子.”

『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 30年 3月. “庚申 梨峴新宮成 王幸觀之大宴 賜護作官 白金 人一斤 賜工徒酒食.”

146) 『高麗史』 卷41 世家41 恭愍王 15年 5月. “癸巳 正陵役 大伐德陵木殆盡 以營齋室 守陵者 不敢禁 又大起公主影殿于王輪寺東南 令百官 以秩出役夫 輦木石 數百人 挽一木 尙不能進 呼耶聲 動天地 晝夜不絕 牛死者 相繼于道.”

147)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 19年 6月. “癸亥 構觀音殿 第三層上梁 壓死者二十六人”

148) 원종 9년 8월에 최동수를 몽고에 보낸 기사를 살펴보면 신묘년 이래 30년간의 전쟁과 역병으로 사망자가 매우 많으며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도 청·장년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의 노동력으로 시전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高麗史』 卷26 世家26 元宗 9年 8月. “元宗 9年 8月 遣大將軍崔東秀 隨吾都止 如蒙古 奏 略曰 顧惟小邦 雖在全盛之時 人民尙寡 況自辛卯 三十年來 兵疫相仍 喪亡太多 雖茲編戶之子遺 僅復農畦之生業 其隸于兵衛 亦未有丁壯驍勇者.”

149) 李貞熙, 「高麗後期 徭役收取의 實態와 變化」, 『역사와 세계』 9, 부산대사학회, 1985, 183쪽.

150) 『高麗史』 卷79 志33 食貨 農桑條. “高宗 四十三年二月 制 諸道被兵凋殘 租賦耗少 其令州縣其人 耕閑地 收租補經費 又令文武三品以下 權務以上 出丁夫有差 防築梯浦瓦浦 爲左屯田 狸浦草浦爲右屯田.”

내려 말하였다. … “東·西의 積倉은 船軍과 其人 각 백 명과 諸色의 匠人을 사용하여 편의에 따라 營造하라.”¹⁵¹⁾

사료 ㉞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와 인명은 조세의 충당에 어려움을 가져와 주현의 기인에게 閑地를 경작하게 하였으며, 경비 보충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또, <표 4>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사료 ㉟의 사례처럼 기인과 선군·장인을 이용하여 동서의 積倉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기인 동원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㉞ 忠宣王 원년 3월에 康安, 延慶의 두 궁을 重新하는데 군현에 명하여 백성을 보내게 하여 役夫로 삼으니 그 수를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宰臣들이 두 궁을 건설하는 일꾼의 징발을 의논하여 현직 재상과 諸君은 하루 세 명을 내고 致仕한 재상 및 현직 3품은 하루 두 명을 내고 4품관 이하는 차등 있게 내도록 하는데 이를 일러 品從이라고 하였다. 또 其人을 役夫로 삼았는데, 기인은 궁실의 修營와 관청의 심부름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 役夫로 군현리의 자식은 반드시 이 工役을 거친 뒤에야 吏職에 임명될 수 있었다.¹⁵²⁾

㉟ 3월에 承旨 廉承益이 그 집의 한 구역을 金字大藏寫經所로 삼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전에 승익이 총애를 받고 사사로이 기인들을 부려서 이 집을 지었는데, 공주에게 책망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런 청이 있었다.¹⁵³⁾

사료 ㉞에서 기인은 반드시 궁실수리나 관부사령의 역을 맡게 하였으며, 이 역이 끝나면 吏職에 보임될 수 있다고 하여 기인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면서도 기인이 일정한 특권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기인의 역에 대한 내용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과 함께 강안·연경궁의 공사에 기인을 役夫로 삼고 있으며 기인이 군현리의 자식은 이 역을 거친 후에야 吏職에 보임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기인의 선상범위가 미보직 향리자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또, 사료

151)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 復位年 11月. “辛未 王在金文衍家 百官會梨峴新宮 王下教曰 … 東西積倉 用船軍其人 各一百名 及諸色匠人 從宜營造.”

152) 『高麗史』 卷83 志37 兵3 工役軍條. “忠宣王元年三月 重新康安延慶二宮 令郡縣 送民爲夫 其數不可紀 宰臣議發兩宮營造夫 見任宰相及諸君 日出三名 致仕宰相 及見任三品 日出二名 四品以下 出有差 是謂品從 又以其人爲夫 其人者 主宮室修營 官府使令之役 郡縣吏之子 必經是役 然後得補 吏職.”

153) 『高麗史節要』 卷20 忠烈王 2年 3月. “三月 承旨廉承益 請以其家一區 爲金字大藏寫經所 許之初 承益 特寵 私役其人 構此家 懼公主見責有是請.”

㉓에서는 충렬왕 때의 嬖幸인 염승익이 사사로이 기인을 동원하여 집을 짓고 있는데, 기인은 국가의 요역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고 대신들의 사사로운 노동력 징발에도 응해야 했다. 이외에도 기인을 각 부처에 분산 예속시켜 노예처럼 부리거나 땀 나무를 구하는데 이용하였다.¹⁵⁴⁾

이들 사료에서처럼 전기의 기인역과는 달리 후기에는 합법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는데, 휴한지를 경작하거나 창고를 짓는 등의 다양한 요역에 이용될 정도로 천역화·고역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인역의 천역화는 1256년(고종 43)에서 忠烈王代(1274~1308) 사이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¹⁵⁵⁾ 고려정부의 기인에 대한 인식은 고려 전기의 출신 지방에 대한 顧問, 사심관의 擧望, 赴擧者의 조사 등과 같은 고려 왕실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서, 고려 후기에는 직접적인 勞役이 부과되는 노동력 징발 대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㉔ 기인제는 세상에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憲廟 至元 사이에 5道の 州郡에서 3백 명을 뽑아서 版圖司와 造成都監에 각 150명씩 나누어 소속시켜 정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경인년부터 왜적의 침범 이래로 주군이 의지할 곳이 흔적 없이 되어 어떤 고을에서는 남아 있는 자가 없어 오래 비게 되었고 관아에서는 정원을 채우느라 뒤쫓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개경에 있는 主家에서는 체포되어 수감된 자들 외에 사람을 고용해 대신 세우면서 그 값과 이자로 하루에 포 1필 씩을 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지탱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집은 파산하거나 혹은 문을 닫고서 그 괴로움을 면하려 합니다. 또 그 고향의 인물을 못살게 굴고 관청의 권위로 위협하여 노비를 빼앗아다가 차례로 돌아가며 역을 서도록 합니다. 비록 번성하는 마을이라도 관리(기인)의 차례가 돌아오면 또한 훗날의 생업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팔고 가져가서 역무에 종사하게 되니 그 폐단이 매우 큼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예전의 폐단을 좇지 마시고 일절 혁파하도록 하소서.¹⁵⁶⁾

154)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 “忠烈王 九年 二月 … 又見人衣破布衫負柴入于宮門 使問之 對曰 將作署其人也 王曰我美衣服 而百姓若此 於心安乎.”

155) 金成俊, 앞의 책, 1985, 78-79쪽.

156) 『高麗史』 卷46 世家46 恭讓王 3年 3月. “其人之制 世無史傳 憲廟至元之間 五道州郡 抄得三百名 分屬版圖司造成都監 各一百五十名爲常額 自庚寅倭寇以來 州郡蕩然失所 或邑無孑遺而長闕 官有定額而追捕 京中主家 當被捉見囚之餘 雇人代立之際 借貸利布 日徵一匹 歲月如流 且不能支 或破家 或閉門 謀免其苦 又侵擾其鄉本貫人物 劫以官威 據奪奴婢 輪次立役矣 雖至盛之鄉 當次之吏亦不計他日之生產 盡賣所藏 資持就役 其弊甚鉅 願殿下 毋循舊弊 一切罷之.”

사료 ㉔과 ㉕은 기인의 정원수에 대한 언급이다. 사료 ㉔에서 기인 100명을 동원하여 적창을 축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사료 ㉕에서는 충렬왕대에 기인 300명을 뽑아서 판도사와 조성도감에 각각 150명씩 나누어 소속시켜 정원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기인의 정원수를 정하게 된 이유는 합법적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동원한 동정직·僧徒·軍人·品從의 사례와 같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정부시설물의 복구와 이궁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월한 확보를 위하여 기인의 정원수를 정하였을 개연성이 높다.¹⁵⁷⁾

㉕ 忠烈王 22년 5월에 中贊 洪子藩이 백성의 일을 편하게 할 조항을 올렸다. … “여러 주의 관리가 서울에 와서 머무르면서 소속 관아의 지시를 받는 것을 其人이라고 합니다. 근래에 기인을 役夫로 부리고 있으니 지방에 번고가 많아 기인이 혹시 해야 할 일에서 빠질 경우 그 年月을 계산하여 그 품삯을 징수하니 主현이 날이 갈수록 점점 피폐하여 집니다. 비록 그 수를 헤아려 감하여 준다고는 하나 아직 균등하지 못함이 있으니 마땅히 열 집이 있는 고을은 한 명을 감하고 다섯 집이 있는 고을은 전부 면제하게 하소서.” 하였다.¹⁵⁸⁾

사료 ㉕과 ㉕에서는 기인이 도망하거나 역을 빠진 대가를 징수하는 것과 함께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입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1343년(충혜왕 4)에 여러 왕실 일가와 재추의 역부를 동원한 기사에서는 이들의 동원과 결석에 대한 징포를 기인과 같게 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된다.¹⁵⁹⁾ 위의 기사를 통해서 기인의 도망에 대한 징포의 규정이 이미 1296년(충렬왕 22)에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인역에 대한 징포는 身役의 物納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¹⁶⁰⁾ 고려 후기는 전기에 비해 노동력 징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157) 노동력 징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정직이나 所民, 僧徒와 軍人을 동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관품에 따라 品從을 내게 하는 등 여러 부류의 계층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기인 300명을 동원한 것은 여러 계층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158)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條, 7條. “忠烈王 二十二年五月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 一 諸州之吏 留京聽候 謂之其人 近以其人 爲之役夫 外方多故 其人或闕 計其年月 以徵其備 所以州縣日漸殘弊 雖則量減 尙有不均 令宜於十室之邑 減一名 五室全免.”

159) 『高麗史』 卷83 志37 兵3 工役軍條. “忠惠王後四年五月 新宮別造成都監 令出諸君宰樞 品從五名 三品四名 四品三名 五六品二名 七八品一名 九品權務并一名 各限五日 輸材木 違者重罰 又令各司 納鑰銅 諸君役夫 日役三十人 大君四十人 其下有差 若闕一日 卽徵布 如其人例.”

160) 李貞熙, 앞의 논문, 1985, 187-190쪽.

요역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流移하지 않은 민호의 요역 부담을 덜고 遊手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물납 또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세우는 방안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기인이 역을 빠지게 되면 체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를 징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¹⁶¹⁾

기인역이 고역화됨에 따라 고역을 견디지 못한 기인이 도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⑫ 忠肅王 5년에 敎하기를, “기인의 役使가 노예보다 심하므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서로 이어서 도망하자 예속된바의 관사에서는 日數를 계산하여 값을 징수하니 주와 군이 그 폐해를 이기지 못하고 많이 流亡하기에 이르렀다. 事審官 및 除役所의 蔭戶로써 이를 대신하고 전부 도망한 주군은 제외시킬 것이다”하였다.¹⁶²⁾

⑬ (辛禍 14년) 10월에 사헌부에서 또 글을 올려 말하기를, … “其人을 각 처에 분산 예속시켜 일을 시키는 것이 노예와 같으니 도망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 습니다. 담당 관사에서 京主人¹⁶³⁾에게 재촉하여 闕布를 1인에 하루에 1필을 징수하니 주인이 갚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주현으로 가서 배로 징수하니 주군이 凋弊하여 집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일체 혁파하여 향리로 돌아가게 하고 각 殿의 役은 근일에 혁파한 창고의 노비로 대신하며 각 관사에서 일을 시키는 자도 역시 辨正都監에 소속되어 있는 公奴婢로 충당하며 관아에 배치된 幕士, 注選 무리들도 또한 모두 혁파하여 백성의 생활을 편안케 하십시오.”하였다.¹⁶⁴⁾

에서처럼 노예와 같은 신분적 구속이 진행되는 현상도 확인된다.

사료 ⑫에서는 기인의 역이 노예보다 심하여 도망치는 자가 많다고 하였으며, 기인의 출신 州縣이나 사심관·제역소음호가 기인의 일을 배상하게 되어 결국 기인법을 혁파하는¹⁶⁵⁾ 내용이다. 그러나 충렬왕대에서 충혜왕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161) 李貞熙, 앞의 논문, 1985, 186-187쪽.

162) 『高麗史』 卷75 志29 選舉 銓注 其人條. “忠肅王五年 敎 其人役使 甚於奴隸 不堪其苦 逋亡相繼 所隸之司 計日徵直 州郡不勝其弊 多至流亡 以事審官及除役所蔭戶代之 全亡州郡其除之.”

163)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해둔 향리로 京邸吏 라고도 하였다. 경저리의 임무는 지방에서 차출하여 중앙으로 보내는 노비의 입역과 도망한 선상노의 보충, 공물 상납과 그 읍의 賦稅 상납 등 다양하였다(韓祐, 앞의 책, 1992, 206-208 쪽).

164)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條. “(辛禍 14年) 十月 憲司又上書曰 … 其人 分隸各處 役之如 奴隸 至有逋亡者 主司督京主人 日徵闕布 人一匹 主人不能償之 直趨州縣 倍數督徵 州郡凋弊 願自今 一切罷去 使還鄉里 其各殿之役 以近日革罷倉庫奴婢 代之 各司之役使者 亦以辨正都監屬公奴婢 充之 司設幕士注選之屬 亦皆革去 以安民生.”

앞의 <표 4>에서와 같이 잦은 이궁 건설과 원의 선박 건조 등 토목공사가 집중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기인제를 혁파하는 것은 노동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기인제의 부활은¹⁶⁶⁾ 불가피하였다.¹⁶⁷⁾

기인제는 부활된 이후에도 기인역은 이전과 같이 노예처럼 심하여 도망하는 자가 생겨나자 사료 ㉓과 같이 기인역을 혁파하고 창고의 노비로 대신하고자 하였다. 기인의 고역에 대한 폐단은 주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㉔ 忠肅王 5년 5월에 교서를 내렸다. … “其人에게 부과되는 일이 노예보다 심하여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함이 잇달아 생기는데 소속 관청에서는 날짜를 계산하여 값을 징수하니 주군들은 그 폐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事審官이나 除役所의 蔭戶로써 이를 대신하게 함을 허락하고[제역소라는 것은 각 宮司와 소속된 민호로서 부역을 바치지 않는 자이다.] 전부 도망간 주군은 그것을 면제할 것이다.”하였다.¹⁶⁸⁾

앞의 사료 ㉑과 ㉔는 기인이 도망하거나 역에 빠지게 되면 그 일수를 계산하여 주현에 그 대가를 징수할 정도로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기인역의 폐단으로 인하여 주현이 날로 쇠잔케 되자 국가에서는 대가를 사심관과 제역소의 음호로서 대신하게 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인제의 폐단은 주현의 쇠잔과 더불어 향역의 고역화와 잔존 향리층의 향역수행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인역의 폐단이 날로 심해지자 앞의 사료 ㉑에서 보듯이 공양왕대에 이르러 방사량이 시무 11事を 올려 또다시 기인제의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가 절실하였으므로 기인제의 혁파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선에까지 계승되었다.

165) 吳煥一, 앞의 논문, 1982, 48쪽.

166) 『高麗史節要』 卷25 忠惠王 4年 6月. “復其人法.”

167) 김성준은 기인법을 부활한 것은 동년 3월에 기공하여 10월에 낙성을 본 新宮의 조영과 관계가 있으며 왕이 신궁의 造營을 서둘렀기 때문에 기인의 노동력에 다시 집착되어 忠肅王 5년에 혁파했던 기인법을 이때에 와서 부활시키게 된 것으로 보았다(金成俊, 앞의 책, 1985, 83쪽).

168)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職制條. “忠肅王五年五月 下教 … 一 其人役使 甚於奴隸 不堪其苦 逃亡相繼 所隸之司 計日徵直 州郡 不勝其弊 可以事審官及除役所蔭戶 代之[除役所者 宮司及所屬民戶 不供賦役者]全亡州郡其除之.”

IV. 結論

高麗의 太祖 王建은 後三國時代를 수습하여 통일왕조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태조의 후삼국통일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체제가 아닌 호족의 도움을 받아 이룩한 호족연합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태조는 미약한 왕권의 안정을 위해 혼인정책·賜姓定策·重幣卑辭策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의 강력한 호족들이 귀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귀부호족과 호족의 자제들에게 官階를 제수하거나 祿을 하사하는 등 적절한 대우를 하였고 호족들은 子弟를 보내어 인질로 삼게 하여 충성심을 보여주려 하였다. 호족이 보낸 인질은 대립적인 두 세력 사이의 강화와 복속의 인적 담보로 완전예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대립적 세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상호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태조는 인질을 그 고을의 顧問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고려왕조에 동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지방의 호족세력이 고려에 복속되어가는 과정에서 태조의 호족세력 포섭 및 지방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인제가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光宗代의 왕권강화와 成宗-顯宗代에 이르는 향촌지배체제의 개편으로 향리직이 세분화·전문화 되면서 향촌지배층과 국가권력 간의 향촌사회 권력구조 공방전이 국가권력의 우위로 결정되었고, 기인은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향리의 지위와 함께 전락되고 말았다. 기인은 국초와는 달리 일정한 身役을 지니게 되어 기인의 지위가 전락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인대상자의 조건은 첫째, ‘兵倉正 이하 副兵倉正 이상’으로 국초와는 달리 戶長層이 선상대상에서 제외되어 하위직급의 향리가 선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역을 담당하는 자가 1,000명 이상인 州는 20세부터 16세 이하의 역의무자 중 나이 40이하 30이상의 자, 1,000명 이하의 州는 16세부터 19세 이하의 역의무자’를 선상하게 하였으며 셋째, ‘富強正直者’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기인으로의 선상을 허락하고 있다.

기인은 지방에 대한 고문의 역할과 사심관의 擧望에 관여했다. 아울러 赴學者

의 신원보증과 宿衛의 役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役의 대가로 입역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의 役을 마치면 同正職을 수여하고 입역기간을 완료하면 加職하였다. 또한 其人田을 지급받고 있었다. 기인에 대한 대우가 규정되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였고 이를 통하여 고려 전기의 기인역은 冚役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 무신정권의 성립에 따른 권력투쟁과 12세기 이후 확대되고 있던 지방사회의 동요를 통해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었다. 국왕의 정무에서 벗어남으로써 국가재정이 궁핍해졌고 무인세력의 경제기반을 확대하기위한 폐단이 있어났으며 중앙지배층의 폐단으로 인해 지방관의 폐단이 연계되어 일어났다. 이후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변동이 계기가 되어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었다.

신분제의 동요는 향리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향리층은 크게 두 층으로 구별되었는데 가문의 크기와 현실적인 지위에 따라 상층의 지위를 가진 호장층과 일반 향리층으로 구분된다. 상층의 지위를 가진 호장층은 무신정권이 새로운 관인층을 필요로 하게 되어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하였다. 아울러 落鄕 관인층에 의한 지방교육의 향상과 그들의 경제적 기반, 주현군의 장교직을 겸하고 있는 신분적 배경과 군공 등으로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잔존 향리층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고역화된 役이 세습되어 그 役이 賤視되고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과정에서 그 役을 담당하는 계층이 고정되어 身良役賤 현상이 증가하였다. 관부사령의 役을 수행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役을 지니는 등 기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丁吏를 통하여 기인의 신분 역시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幕士의 사례를 통하여 기인 역시 고려 후기에 身良役賤계층으로 추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향촌사회의 붕괴와 함께 향역의 고역화가 초래되었고 향역 수행에 대한 부담을 지니게 된 일반 향리층은 고역화 된 향역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고역화된 향역을 피역하기 위해 향리층은 과거나 군공을 통한 관직의 취득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향역을 면하거나 권세가에 의탁·유망·승려가 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역하였다.

고려 후기 고역화된 향역의 변화는 향리의 지위 격하와 함께 향리출신인 기인의 지위와 대우에도 영향을 주었다.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파괴된 정부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토목공사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노동력 징발의 대상이 되었던 기인에게 力役이 부과되게 하였다. 고려 후기의 기인은 租賦의 감소에 의한 경비보충을 위해 휴한지를 경작하였고 강안·연경 두 궁의 重新에 동원되었다. 또 대신의 私宅을 짓는데 이용되거나 땀감을 구하는 등 점차 苦役化 내지는 賤役化되었다. 이와 같은 기인역의 천역화는 몽골의 침입으로 인구의 격감과 농토의 황폐, 몽골복속기의 科斂, 유민의 증가에 의한 시설복구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볼 때 1256년(고종 43)에서 忠烈王代 사이에 본격화 되었다.

사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 시기의 기인의 수는 충렬왕대에 이르러 300명으로 정원을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인의 정원수를 정하게 된 이유는 합법적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동원한 동정직·僧徒·軍人·品從의 사례와 같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정부시설물의 복구와 이궁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월한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또한, 기인역의 물납과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세우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사료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1296년(충렬왕 22)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기인역의 고역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기인이 도망하는 등 폐단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인의 역을 사심관 및 제역소의 음호로써 대신하게 하여 기인제를 일시적으로 파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노동력을 수급할 대책을 세울 수 없었으므로 기인제를 부활시키게 되었다.

기인제가 부활된 이후에도 폐단은 계속되어 기인이 도망하거나 역에 빠지게 되면 그 일수를 계산하여 주현이 대신 대가를 징수하는 등 그 폐단이 주현에도 영향을 미쳐 주현이 날로 쇠잔케 되었다. 이와 같은 폐단이 계속되자 기인제를 혁파하여 창고의 노비로 이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공양왕대에도 방사량이 또다시 기인제의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고려는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인제의 혁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왕조에까지 계승되어 운용되었다.

<參考文獻>

1. 史料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高麗墓誌銘集成』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祖實錄』 『東國李相國集』 『補閑集』

2. 研究著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3, 탐구당, 1993.
_____, 『한국사』 14, 탐구당, 1993.
_____, 『한국사』 15, 탐구당, 1993.
_____, 『한국사』 19, 탐구당, 1993.
_____, 『한국사』 20, 탐구당, 1993.
金蘭玉, 『高麗時代 賤事·賤役良人 研究』, 신서원, 2000.
金成俊,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1985.
金皓東, 『고려 무신정권시대 文人知識層의 현실대응』, 景仁文化社, 2003.
박용운 외 지음,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007.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申安湜,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200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高麗-朝鮮前期 中人研究』, 신서원, 2001.
오일순, 『高麗時代 役制와 身分制 變動』, 혜안, 2000.
李佑成,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李貞薰, 『高麗前期 政治制度 研究』, 혜안, 2007.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 요역제도를 중심으로』, 國學資料院, 2000.
韓祐勳, 『其人制研究』, 一志社, 1992.

- 許興植, 『高麗科擧制度研究』, 一志社, 1992.
- 洪承基, 『高麗社會史研究』, 一潮閣, 2001.
- _____, 『高麗政治史研究』, 一潮閣, 2001.
- _____, 『高麗社會經濟史研究』, 一潮閣, 2001.
- _____, 『高麗末 政治史 研究』, 혜안, 2005.

3. 研究論文

- 權斗奎, 「高麗時代의 身分制와 階層構造」, 『안동사학』 2, 안동사학회, 1996.
- _____, 「高麗時代 足丁과 半丁의 規模」, 『한국중세사연구』 5, 한국중세사학회, 1998.
- 권영국, 「신분구조와 직역」, 『한국역사입문』 2, 풀빛, 1995.
- 具山祐,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역사와 세계』 12, 부산대사학회, 1988.
- _____, 「高麗 成宗代의 鄉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사회적 갈등」, 『韓國文化研究』 6,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3.
- _____,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연구의 현황과 방향」, 『釜山史學』 23,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9.
- _____, 「高麗 太祖代의 귀부 호족에 대한 정책과 향촌사회」, 『지역과 역사』 11, 부경역사연구소, 2002.
- 金光洙, 「高麗時代의 同正職」, 『歷史教育』 11·12, 歷史教育研究會, 1969.
- 김난옥, 「고려후기의 雜尺」,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 金美旻, 「高麗時代 鄉吏의 地位」, 『경주사학』 1, 경주사학회, 1982.
- 金成俊, 「其人의 性格에 대한 考察 (上)」, 『역사학보』 10, 역사학회, 1958.
- _____, 「其人의 性格에 대한 考察 (下)」, 『역사학보』 11, 역사학회, 1959.
- 김용선, 「과거와 음서」, 『韓國史市民講座』 46, 일조각, 2010.
- 김일영, 「韓國 地方政治 起源에 대한 연구」, 『釜山女子專門大學 論文集』 17, 부산여자대학, 1995.

- 金載名, 「高麗時代 寺·監 官司와 國家財政 : 大府寺와 將作監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청계사학회, 1998.
- 羅恪淳, 「高麗鄉吏의 身分的 特性과 그 變化」, 『사학연구』 45, 한국사학회, 1992.
- 나영훈, 「조선초기 繕工監의 운영과 官원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62, 조선시대사학회, 2012.
- 劉承源, 「朝鮮初期의 ‘身良役賤’階層 : 稱干稱尺者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73.
- 변태섭, 「高麗初期의 地方制度」, 『한국사연구』 57, 한국사연구회, 1987.
- 서성호, 「高麗 수공업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論』 41·4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9.
- 兪炳基, 「高麗初 豪族의 動向과 王權強化策 - 光宗의 王權強化策을 中心으로」, 『전주사학』 1,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84.
- 유호석, 「고려 과거제도의 성립」, 『韓國史市民講座』 46, 일조각, 2010.
- 李仁哲, 「高麗時代 足丁·半丁의 新解釋」,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 李貞熙, 「高麗後期 徭役收取의 實態와 變化」, 『역사와 세계』 9, 부산대사학회, 1985.
- 장지연, 「고려후기 개경 궁궐 건설 및 운용방식」,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2006.
- 조부연, 「韓國古文書의 其人立役에 관한 小考; 其人立役價의 時代的 比較」, 『韓國學文獻研究의 現況과 展望』, 아세아문화사, 1983.
- 주웅영, 「고려조 신분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교육논집』 1, 역사교육학회, 1987.
- 채수환, 「王建의 高麗建國 過程에 있어서 豪族勢力」, 『白山學報』 82, 백산학회, 2008.
- 韓祐勳,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 : 其人制起源說에 對한 檢討에 붙여서」(上·下), 『歷史學報』 12, 역사학회, 1960.
- _____, 「麗初의 其人選上規制」, 『역사학보』 14, 역사학회, 1961.

- 황희경, 「高麗 長吏의 職制와 그 變遷」, 『전북사학』 24, 전북사학회, 2001.
- 洪承基, 「高麗時代의 雜類」, 『歷史學報』 57, 歷史學會, 1973.
- 홍영의,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2010.

4. 學位論文

- 權眞澈, 「高麗太祖의 民族統合政策研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1997.
- 金東業, 「高麗 太祖의 對豪族政策」,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金榮日, 「高麗時代의 其人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金玉圭, 「高麗時代 鄉吏의 身分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4.
- 김현라, 「高麗後期 下層身分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 朴敬子, 「高麗時代 鄉吏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朴俣瑩, 「高麗前期 鄉吏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朴淳我, 「高麗後期 鄉吏層의 避役」,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 徐權基, 「高麗 鄉吏制의 成立과 그 變遷에 對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 嚴成鎔, 「高麗初期 王權과 地方豪族의 趨移 : 王權과 관련된 地方豪族의 身分 變化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5.
- 吳煥一, 「高麗時代 其人制度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李明仙, 「고려전기 향리의 위상과 기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